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1324-01

2016. 3.

쌀 의무자조금 도입 방안 연구

연구기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농림축산식품자료실



0023092



농림축산식품부

7
9
16-123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쌀 의무자조금 도입 방안 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년 3월

- 연구기관명 :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책임자 : 조재성 (충남대학교 조교수)
- 연구원 : 박종수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 연구보조원 : 김태형 (충남대학교 조교)

※ 본 연구 결과는 연구진의 의견 및 주장이며,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음.

차 례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 3. 기대효과 4

제2장 쌀 산업 동향

- 1. 쌀 생산현황 5
- 2. 쌀 소비 및 재고현황 8
- 3. 쌀 가격현황 13
- 4. 쌀 유통현황 16
- 5. 쌀 수출입 현황 20
- 6. 쌀 산업 문제와 자조금의 역할 26

제3장 국내외 주요 자조금 사례

- 1. 우유의무자조금 29
- 2. 한돈의무자조금 35
- 3. 한우의무자조금 41
- 4. 닭고기의무자조금 46
- 5. 인삼의무자조금 50
- 6. 해외 쌀 자조금 사례 57

제4장 쌀 의무자조금 도입방안

- 1. 의무자조금 도입 절차 60

2. 자조금준비위원회 설립 및 의무자조금사업 준비	64
3.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출범 및 의무자조금사업 시행	68
4. 거출 대상	70
5. 거출 방식 및 법률적 검토	73
6. 정부 출연금 및 법률적 검토	79
7. 의무자조금 미납 시 제재조치	83

제5장 요약 및 결론

부 록 1. 축산자조금	91
부 록 2. 농수산자조금	121
참고 문헌	166

표 차 례

제2장

표 2- 1.	소매업체의 가공밥 판매 현황(POS DATA)	11
표 2- 2.	양곡연도별 산지 쌀값 동향	14
표 2- 3.	정부지원 RPC 운영 현황	17
표 2- 4.	소비자 유통업체별 쌀 판매 현황(POS DATA)	18
표 2- 5.	수입쌀 원산지 표시 관련 위반 현황	20
표 2- 6.	UR협상 이후 쌀 의무수입 계획량	21
표 2- 7.	2004년 쌀 재협상 이후 의무수입 계획량	22
표 2- 8.	관세화 이후 의무수입량 이외의 쌀 수입 동향	23

제3장

표 3- 1.	우유자조금 거출 방식 및 규모	31
표 3- 2.	우유자조금 납부 과정	32
표 3- 3.	연도별 우유자조금 거출 현황	33
표 3- 4.	연도별 우유자조금 사용실적	34
표 3- 5.	한돈 의무자조금 거출 방식 및 규모	37
표 3- 6.	한돈자조금 연체금 및 징수수료	37
표 3- 7.	연도별 한돈자조금 거출 현황	38
표 3- 8.	연도별 한돈자조금 사용실적	40
표 3- 9.	한우 의무자조금 거출 방식 및 규모	42
표 3-10.	한우자조금 연체금 및 징수수료	43
표 3-11.	연도별 한우자조금 거출 현황	44
표 3-12.	연도별 한우자조금 사용실적	45
표 3-13.	닭고기 의무자조금 거출 대상 및 규모	47

표 3-14.	닭고기 의무자조금 징수수료 및 고지서발송, 수납일	47
표 3-15.	연도별 닭고기자조금 거출 현황	48
표 3-16.	2013년 닭고기자조금 사용실적	49
표 3-17.	주요 인삼자조금 거출 대상 및 규모	51
표 3-18.	인삼자조금 연체금 및 징수수료	54
표 3-19.	2015년 인삼자조금 거출 현황	55
표 3-20.	2015년 인삼자조금 사용실적	56
표 3-21.	2016년 인삼자조금 조성계획	56

제4장

표 4- 1.	재배규모별 농가수, 재배면적 및 소득	71
표 4- 2.	2ha 이상 재배농가에서 거출시 공제 후 재배규모별 거출액 ...	76
표 4- 3.	국내 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조 지급 현황	82

그림 차례

제2장

그림 2- 1.	벼 재배면적 추이	6
그림 2- 2.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논벼 기준) 추이	7
그림 2- 3.	쌀 생산량 및 단수 추이	8
그림 2- 4.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9
그림 2- 5.	1인당 쌀 소비 감소율(전년대비)	9
그림 2- 6.	식용 및 가공용 소비량 추이	10
그림 2- 7.	벼 재배면적과 쌀 소비량 감소 추이	12
그림 2- 8.	양곡연도별 쌀 재고량 및 재고율	13
그림 2- 9.	연산별 쌀 가격 동향	15
그림 2-10.	쌀 유통경로	16
그림 2-11.	수입쌀 유통경로 업종별 점유율(2013년)	19
그림 2-12.	국내산 쌀 수출량 추이	24
그림 2-13.	국가별 수출물량 비중(2013~2015년 평균)	25
그림 2-14.	중장기 쌀 공급량과 수요량 전망	27

제3장

그림 3- 1.	생산농가 및 생산자 단체에서의 의무자조금 거출경로	52
그림 3- 2.	자체검사 업체에서의 의무자조금 거출경로	53
그림 3- 3.	미납자조금 거출경로	54

제4장

그림 4- 1. 의무자조금 도입 절차도	63
그림 4- 2. 사업계획 승인 단계	70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민 1인당 쌀소비량은 1979년 135.6kg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1990년 119.6kg, 1995년 106.5kg, 2000년 93.6kg, 2005년 80.7kg, 2010년 72.8kg, 2015년에는 62.9kg까지 감소함. 특히, 최근 10년간(2005~15년) 소비량은 22.1% 급감함.
- 미곡 생산량도 1988년 605만 톤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1990년 560만 톤, 1995년 469만 톤, 2000년 529만 톤, 2005년 476만 톤, 2010년 429만 톤, 2015년에는 432만 톤까지 감소함. 하지만 생산량 감소폭은 9.3%로 동 기간 소비량 감소폭 22.1%에 비해 매우 낮아 쌀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수급불균형의 주원인인 쌀 소비 감소는 198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국제 교류의 증가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식품의 종류와 대체 식품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함. 최근 들어,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간편식 및 외식 수요가 증가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잡곡을 중심으로 한 다른 양곡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쌀 소비 감소 추세는 점차 심화되고 있음.

- 2015년 쌀 관세화 시행으로 향후 수입쌀의 내수 시장 잠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쌀 소비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수급불균형의 심화는 향후 수급안정 및 재고관리를 위한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고, 쌀 산업 기반을 위축시켜 영세 소농의 퇴출 및 농가 소득 감소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 하지만 FTA 협정 및 WTO/DDA 협상 등으로 정부의 시장개입 범위가 점차 축소되는 상황에서 쌀 산업의 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최근 들어, 쌀 생산자단체들을 중심으로 쌀 의무자조금 도입을 통해 자구적인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 수급안정, 조사, 연구, 교육 사업 등을 실시하여 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증가하고 있음.
- 2015년 7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의 전국 8도의 쌀전업농 회원 농가 1,2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쌀 자조금 제도 도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농가 중 88.2%가 쌀 자조금사업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79.8%가 쌀 자조금사업에 찬성하고, 78.8%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쌀 자조금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함.
- 본 연구는 쌀 의무자조금 도입에 대한 필요성과 생산자들의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쌀 의무자조금 도입과 추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와 생산자단체를 포함한 쌀 의무자조금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및 방법

2.1. 연구 내용

- 쌀 산업 현황과 자조금제도 도입의 필요성
- 우리나라 농축산물 의무자조금 우수 사례
 - 한우, 한돈, 우유, 인삼 등 사례 연구
- 쌀 의무자조금 도입 방안
 - 거출 대상 및 방식, 자조금 단체 구성 방안
- 쌀 의무자조금 법제화 방안
 - 농축산물 의무자조금 관련 법 검토 등을 통한 법제화 방안 제시

2.2. 연구 방법

- 문헌조사를 통해 자조금 제도의 이론적인 내용과 농축산물 의무자조금의 우수 사례 제시
-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쌀 의무자조금 제도의 합리적인 도입방안 도출
- 전문가 자문 및 법률 검토 등을 통해 자조금 도입 방안 및 법제화 방안 검토

3. 기대효과

- 정부를 포함한 쌀 의무자조금 추진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 쌀 재배농가 및 관련 단체와 정책 담당자의 자조금사업에 대한 인식제고에 일조
- 쌀 의무자조금 관련법 제정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

제 2 장

쌀 산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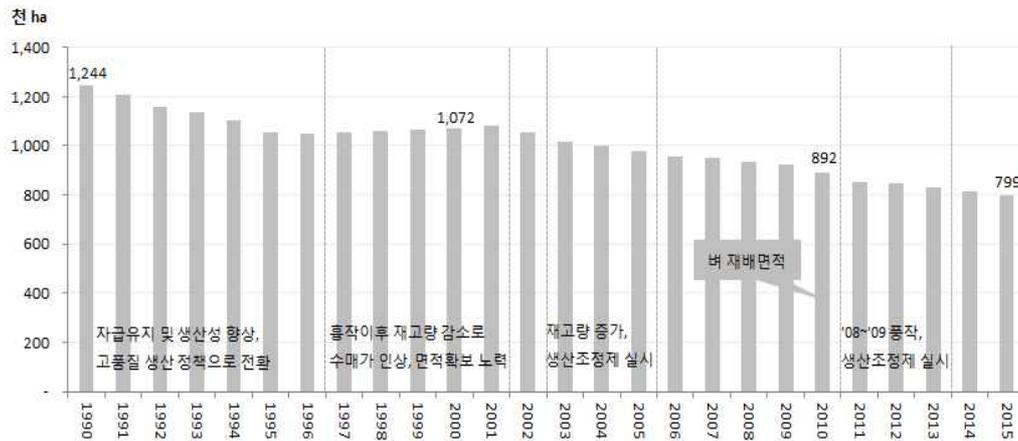
1. 쌀 생산현황

1.1. 벼 재배면적 감소, 단수 증가

- 1990년대 들어 쌀 자급률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면서 쌀 증산 정책은 자급유지 정책으로 전환되었으며, UR 협정에 따른 보조금 감축 의무 이행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쌀 수매가격 인상폭이 동결 또는 하락하면서 벼 재배면적은 감소세로 전환됨.
- 1995년 흉작으로 쌀 재고량이 급감함에 따라 수급안정 및 면적 확보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면서 2001년까지 벼 재배면적은 일시적인 증가세를 보임.
 - 벼 재배면적은 1995년 105만 6천 ha까지 감소한 후, 1997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어 2001년에는 108만 3천 ha까지 늘어남.
- 2000년대 이후 건축과 택지개발 증가 등에 따른 경지면적 감소와 단위면적당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작물로의 작목 전환, 재고량 누증에 따른 생산조정 실시, 쌀 수매제도 폐지 등으로 벼 재배면적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 2015년 벼 재배면적은 79만 9천 ha로 전년대비 2.0% 감소하였으며, 1990년 이후 연평균 1.8%씩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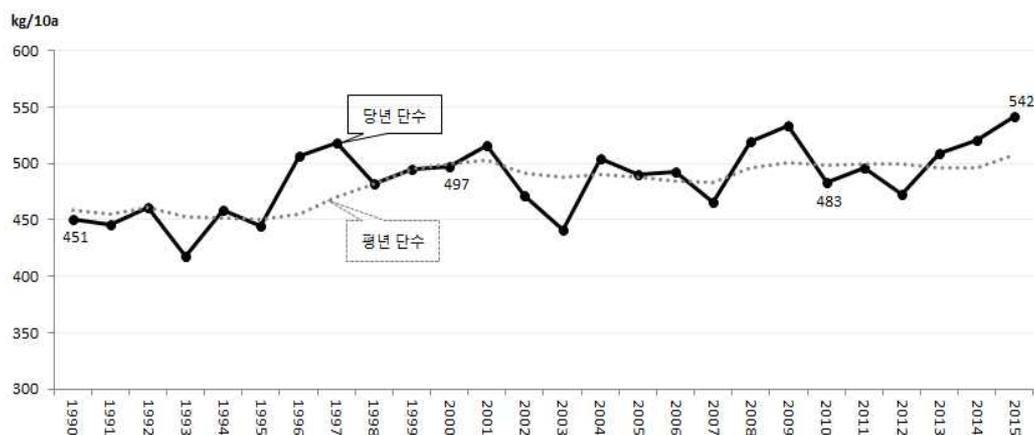
그림 2-1. 벼 재배면적 추이



자료: 통계청.

-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은 매년 기상여건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영농기술의 향상, 생산성 증대를 위한 품종 개발 등으로 1990년 이후 쌀 단수(논벼 기준)는 2015년까지 연평균 0.7%씩 증가함.
- 2007~08년 연이은 풍작 이후 작황이 좋지 않았으나, 2013년부터는 기상여건 호조로 최근 3년 연속 단수는 큰 폭으로 증가함. 특히, 2015년 논벼 단수는 전년대비 22kg 증가한 10a당 542kg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그림 2-2.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논벼 기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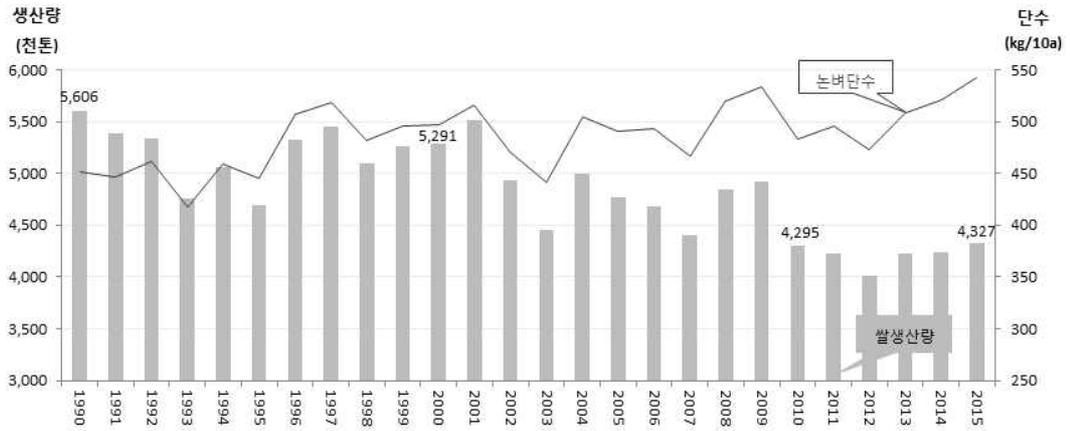


주: 평년 단수는 당년을 포함한 과거 5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통계청.

1.2. 쌀 생산량 감소

- 쌀 생산량은 1990년 이후 벼 재배면적 감소폭이 단수 증가폭보다 크게 나타나 2015년까지 연평균 1.0%씩 감소함.
- 쌀 생산량이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단수 변동에 따라 풍년과 흉년이 반복되고 있음.
 - 2008년과 2009년 연이은 대풍으로 2년 연속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나, 이후 작황 부진으로 2010~2013년까지 쌀 생산량은 감소함.
- 2013년부터 기상여건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이례적으로 3년 연속 생산량이 증가하여 최근 쌀 공급과잉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연이은 풍작으로 재고량이 급증하여 정부는 수급안정을 위한 시장격리를 추진하고 있음.
 - 2015년 쌀 생산량은 432만 7천 톤으로 전년대비 2.0% 증가함.

그림 2-3. 쌀 생산량 및 단수 추이



자료: 통계청.

2. 쌀 소비 및 재고현황

2.1. 1인당 쌀 소비량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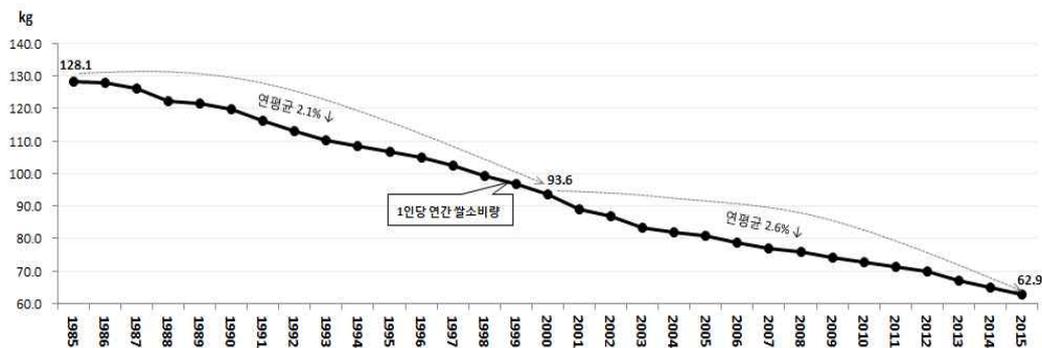
○ 1인 가구의 증가, 간편식 선호, 쌀 대체 식품의 소비 증가 등으로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2015 양곡연도 1인당 쌀 소비량은 전년대비 3.4% 감소한 62.9kg으로 1980년대 초 소비량의 절반에 불과함.

- 1985 양곡연도를 기점으로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반등 없이 매년 감소하고 있음.
- 반면, 2014년 1인당 연간 과일류 소비량은 65.1kg으로 1985년에 비해 약 2배 증가하였고, 육류 소비량은 45.1kg으로 3배 이상 증가함.

○ 2006년부터 가래떡데이 행사, 아침밥 먹기 운동 등 다양한 소비촉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쌀 소비 감소는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소비량 감소폭은 커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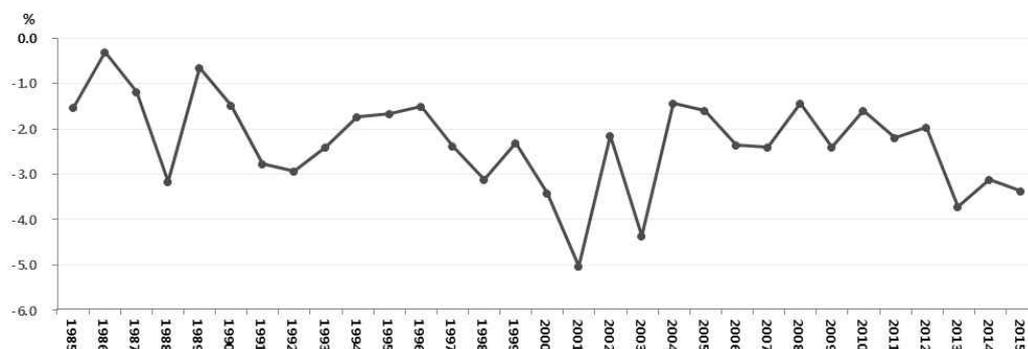
- 쌀 소비량은 198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0년까지 연평균 2.1%씩 감소하였으며, 2000년 이후에는 연평균 2.6%씩 감소함.
- 2000년대 중반 이후 전년대비 1인당 소비량 감소율은 2% 내외였으나, 최근 3년간 3.5% 내외의 높은 감소율을 보임.

그림 2-4.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주: 양곡연도(전년 11월 ~ 당년 10월) 기준임.
자료: 통계청.

그림 2-5. 1인당 쌀 소비 감소율(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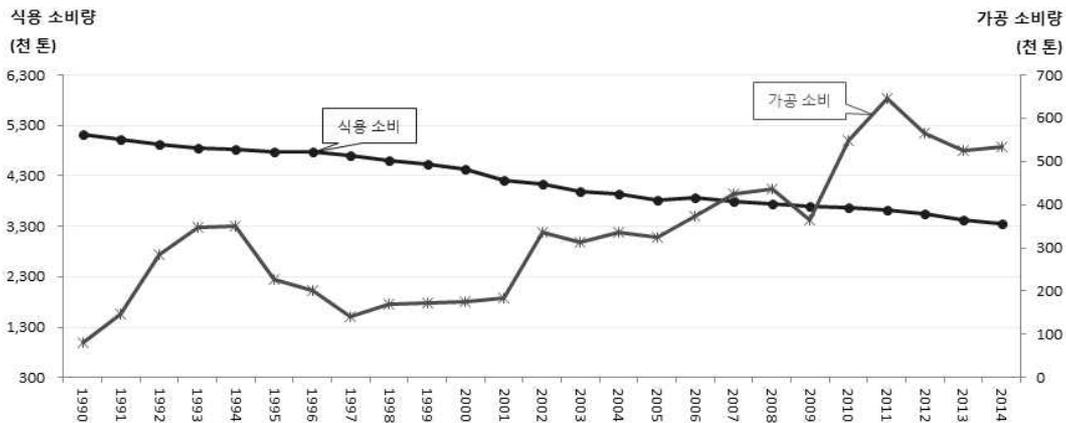


주: 양곡연도(전년 11월 ~ 당년 10월) 기준임.
자료: 통계청.

2.2. 식용 소비량 감소, 가공용 소비량 증가

- 1인당 쌀 소비량 감소로 식용 소비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가공용 소비량은 증가 추세임.
 - 2008~2009년 연이은 대풍 이후 정부는 재고 감축의 일환으로 가공용 쌀 공급가격을 2012년까지 인하하였고, 쌀가루 소비 촉진 등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함.
- 2014 양곡연도 식용 쌀 소비량은 334만 톤으로 2000년 이후 연평균 2.0% 감소한 반면, 2014 양곡연도 가공용 쌀 소비량은 53만 5천 톤으로 2000 양곡연도 17만 5천 톤에서 연평균 8.3%씩 증가함.

그림 2-6. 식용 및 가공용 소비량 추이



주: 양곡연도(전년 11월~당년 10월) 기준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

○ POS(Point Of Sales) DATA¹ 분석결과, 가공밥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로 2015년 기준 소매업체의 가공밥 판매액과 판매량은 각각 전년 대비 16.6%, 16.4%씩 증가함.

- 간편식 선호가 늘어나면서 2015년 기준 복합밥류 판매액은 전년대비 41.7% 증가함.

○ 가공용 소비량은 식용보다 상대적으로 적으나, 전반적인 쌀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가공밥 시장의 성장은 향후 쌀 소비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 시 가공밥 시장 공략의 중요성을 시사함.

표 2-1. 소매업체의 가공밥 판매 현황(POS DATA)

구 분	2012	2013	2014	2015 (추정)	증감률(%)		
					14/13	15/14	
판매액 (백만 원)	전체	165,015	190,247	209,627	244,465	10.2	16.6
	맨밥류	154,412	168,073	185,829	210,752	10.6	13.4
	-흰밥	138,757	141,579	153,787	175,804	8.6	14.3
	-잡곡밥	15,655	26,494	32,042	34,947	20.9	9.1
	복합밥류	10,603	22,173	23,798	33,713	7.3	41.7
판매량 (톤)	전체	33,283	35,837	39,533	46,022	10.3	16.4
	맨밥류	32,148	34,118	37,744	43,620	10.6	15.6
	-흰밥	29,895	30,321	33,143	38,346	9.3	15.7
	-잡곡밥	2,254	3,798	4,601	5,273	21.1	14.6
	복합밥류	1,135	1,719	1,789	2,403	4.1	3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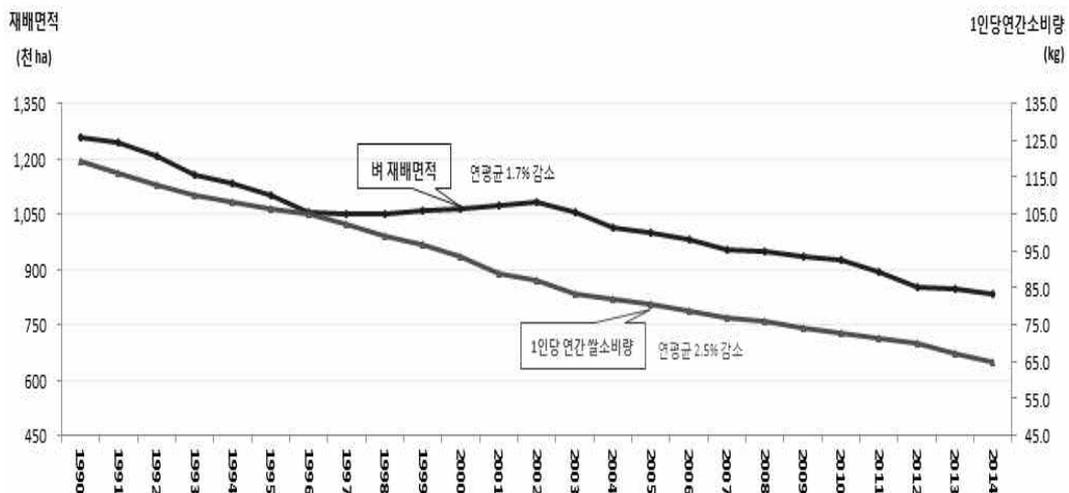
자료: 농업전망 2016 재인용.

1 링크아즈텍사의 3,314개 소매업체 자료임.

2.3. 쌀 소비감소로 공급과잉 및 쌀 재고량 누증

- 벼 재배면적은 1990~2014 양곡연도까지 연평균 1.7%씩 감소하였으나, 1인당 소비량은 동 기간 연평균 2.5%씩 감소하여 매년 초과 공급물량이 발생하고 있음.
 - 동 기간 쌀 생산량은 연평균 1.4% 감소한 반면, 식용 소비량은 연평균 1.8% 감소함.

그림 2-7. 벼 재배면적과 쌀 소비량 감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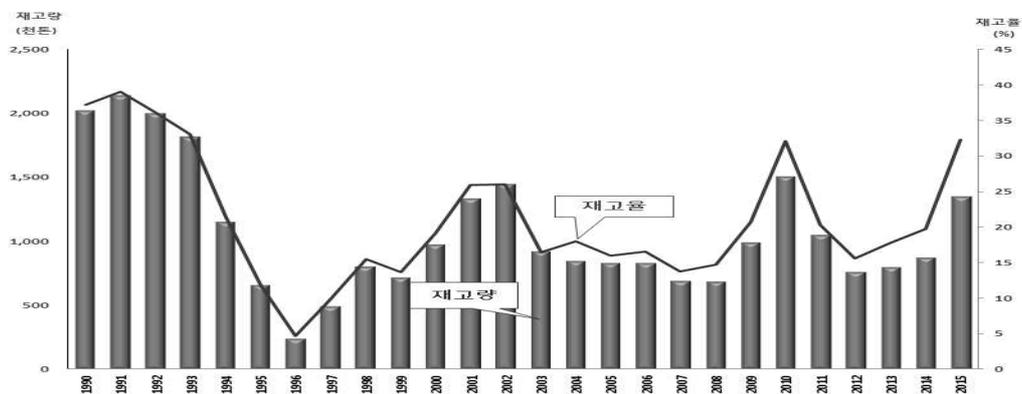


주: 양곡연도(전년 11월~당년 10월) 기준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이 국내 쌀 생산량과 밥쌀용 수입량을 합하여 공급량으로 가정하고, 식용 및 민간가공 소비를 수요량으로 가정하여 연평균 초과공급물량을 추정한 결과, 2005~14 양곡연도까지 최근 10년간 연평균 초과공급물량은 75만 톤으로 추정됨.
 - 모든 용도별 소비량(식용, 가공용, 종자, 수출, 감모)을 고려할 경우, 동 기간 36만 톤이 공급과잉인 것으로 나타남.

- 매년 초과 공급물량이 발생하는 가운데 2013년 이후 연이은 풍작과 소비 감소로 쌀 재고량은 최근 들어 급증함(농업전망 2016).
 - 2015 양곡연도 기말재고량은 135만 2천 톤으로 전년 대비 54.7% 증가하여 기말재고율은 32.3%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됨.
 - 2015년 대풍으로 정부의 시장격리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2016 양곡연도 기말재고량은 16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2-8. 양곡연도별 쌀 재고량 및 재고율



주: 재고율=기말재고량/총수요량.

자료: 농업전망 2016 재인용.

3. 쌀 가격현황

3.1. 공급과잉으로 산지 가격 하락세

- 과거 쌀 가격은 수확기(10~12월)에 하락하고 단경기(7~9월)에 상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소비부진과 재고과잉으로 단경기에 가격이 하락하는 역계절진폭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산지 쌀 가격은 총 3번의 역계절진폭이 발생하였으며, 풍작이었던 2014~15 양곡연도에는 모두 역계절진폭이 나타남.
 - 역계절진폭이 자주 발생할 경우, 산지유통업체는 경영악화로 수확기 벼 매입에 소극적일 수 있으며 이는 쌀 가격 하락 및 농가소득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음.

표 2-2. 양곡연도별 산지 쌀값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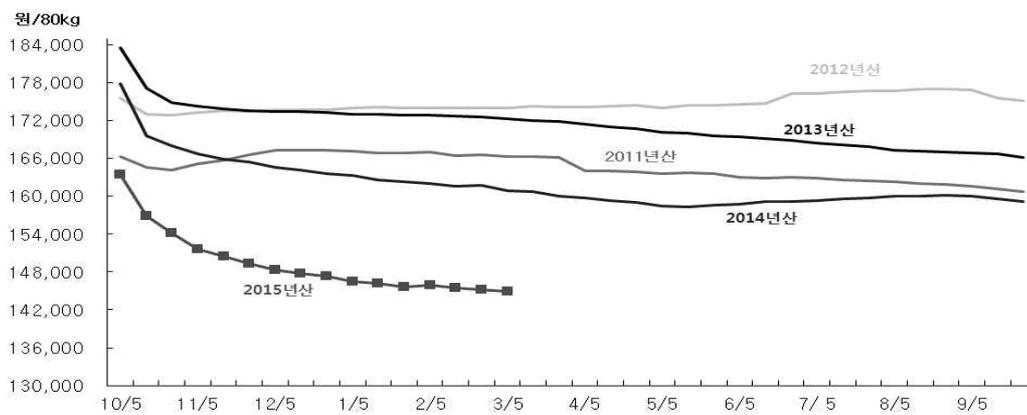
단위: 원/정곡80kg

양곡연도	연평균 가격 (11~10월)	수확기 가격 (10~12월)	단경기 가격 (7~9월)	계절진폭 (%)
2011	149,645	137,423	153,207	11.5
2012	165,293	166,068	161,960	-2.5
2013	175,090	173,692	176,418	1.6
2014	170,748	175,279	167,309	-4.5
2015	160,801	167,347	159,758	-4.5

자료: 통계청.

- 2015년산 수확기 벼 가격과 쌀 가격은 생산량 증가, 역계절진폭 발생, 이월 물량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하락세를 보임.
 - 수확기에 2015년산 신곡 20만 톤이 시장격리 되었으나, 수확기 평균 쌀 가격은 80kg당 15만 2,158원으로 전년대비 9.1% 하락함.
 - 이에 정부는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신곡수요를 상회하는 물량은 추가 격리한다는 방침을 발표함.

그림 2-9. 연산별 쌀 가격 동향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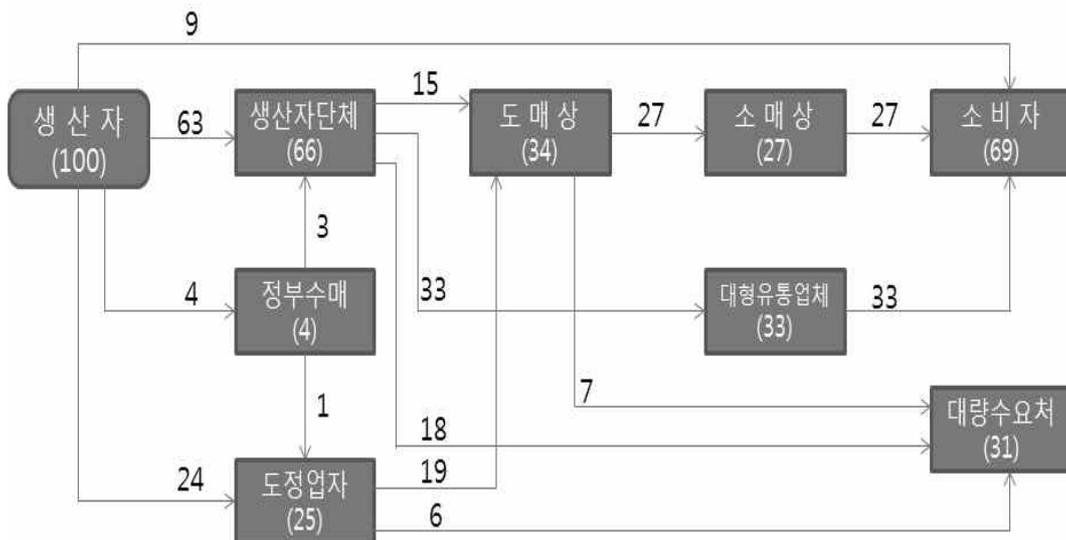
4. 쌀 유통현황

4.1. 국내산 쌀 유통 현황

- 벼는 도정과정이 요구됨에 따라 대부분 RPC(미곡종합처리장)와 도정공정에서 가공과정을 거친 후 도매상과 소매상을 통해 유통됨.
- 쌀은 산지에서 농협을 포함한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소비지 시장에서는 대형유통업체의 유통비중이 높음.
 - 2014년 생산자단체와 도정업체의 유통비중은 각각 66%와 25%임.
 - 소매단계에서는 대형유통업체(33%), 소매상(27%), 생산자와의 직거래(9%)를 통해 소비자(69%)에게 판매되거나, 대량수요처(31%)에 판매됨.

그림 2-10. 쌀 유통경로

단위: %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4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 RPC는 고품질 쌀 생산·유통, 민간유통기능 활성화를 위해 1991년 시범사업 이후 총 345개소(정부지원 328개소, 자체조성 17개소)가 설립되었으나, 최근 가공시설 통폐합, 경영악화 등으로 산지유통의 핵심주체인 RPC 개소수는 감소 추세임.
- 2015년 3월 기준, 정부지원 RPC는 총 226개소(농협 149개소, 민간 77개소)로 2010년 대비 14.1% 감소하였으며, 이중 농협 RPC는 5.7%, 민간 RPC는 26.7% 감소하여 민간 RPC 감소폭이 높음.
 - 최근 RPC 감소의 원인은 RPC의 출하비중이 높은 대형유통업체의 쌀 판매 부진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판단됨.

표 2-3. 정부지원 RPC 운영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263	255	253	235	234	226
농협	158	156	152	151	151	149
민간	105	99	81	84	83	7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

- POS 자료 분석결과, 1인당 쌀 소비량 감소로 소비자 유통업체의 쌀 판매량도 감소 추세로 2015 양곡연도 소비자 유통업체의 전체 쌀 판매량은 전년대비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할인점 판매량이 23.5% 줄어들어 감소폭이 컸으며, 개인소매점과 체인슈퍼는 전년대비 소폭 증가함.
- 소매업체별 판매 비중을 살펴보면, 개인소매점과 체인슈퍼는 증가 추세, 할인점과 백화점은 감소 추세임.
 - 2014 양곡연도까지는 할인점 판매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015 양곡연도에는 개인소매점, 체인슈퍼, 할인점 순으로 판매 비중이 높음.

표 2-4. 소비지 유통업체별 쌀 판매 현황(POS DATA)

단위: 톤

구 분	2013양곡연도 (12.11~13.10)	2014양곡연도 (13.11~14.10)	2015양곡연도 (14.11~15.10)	증감률(%)	
				14/13	15/14
전국	542,609(100.0)	512,531(100.0)	484,321(100.0)	-5.5	-5.5
할인점	193,267(35.6)	170,428(33.3)	130,401(26.9)	-11.8	-23.5
개인소매점	169,218(31.2)	168,241(32.8)	177,942(36.7)	-0.6	5.8
체인슈퍼	172,696(31.8)	168,096(32.8)	171,375(35.4)	-2.7	2.0
백화점	7,153(1.3)	5,371(1.0)	4,150(0.9)	-24.9	-22.7
편의점	275(0.1)	395(0.1)	453(0.1)	43.8	14.5

주 1) 할인점은 매장면적 1,000평 이상의 상시가격 파괴형으로 운영되는 점포로 대형유통업체를 의미하며, 체인슈퍼는 법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마켓을 의미함.

2) ()는 비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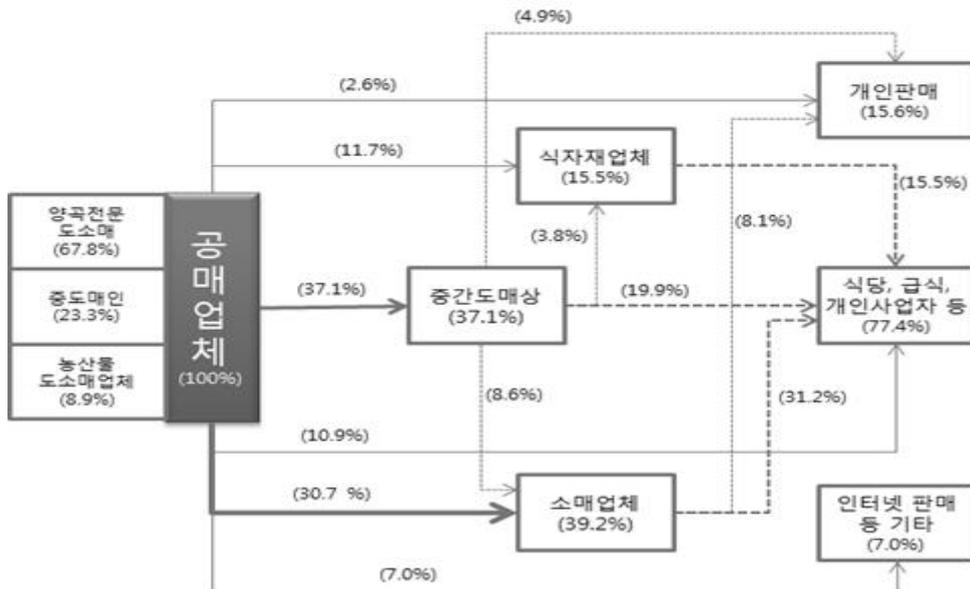
자료: 농업전망2016 재인용.

4.2. 수입쌀 유통 현황

○ (김태훈 외, 2014)가 공매업체와 중간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쌀 유통경로 및 비중을 조사한 결과, 최종적으로 식당, 급식, 개인사업자 등에게 판매되는 비중(77.4%)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개인판매(15.6%), 인터넷 판매 등(7.0%)의 순으로 나타남.

- 과거 수입쌀 유통경로와 비교하면 공매업체에서 식자재업체, 소매업체, 인터넷 판매 등으로 유통되는 비중은 증가한 반면, 중간도매상, 개인판매, 식당·급식 등으로 유통되는 비중은 감소함.

그림 2-11. 수입쌀 유통경로 업종별 점유율(2013년)



자료: (김태훈 외, 2014) 재인용.

- 수입쌀 가격은 국내산 가격보다 낮고, 식자재업체, 중간도매업자, 소매업자 등 다양한 경로를 거쳐 판매됨에 따라 부정유통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향후 국내산 쌀 소비촉진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의 수입 쌀 부정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함.
- 2011년 2월 11일부터 100m² 미만 모든 음식점에 원산지표시를 확대 시행하면서 수입쌀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늘어남.
- 2015년 8월 기준, 수입쌀 원산지 표시 관련 위반 건수는 전체 124건 가운데 밥쌀용이 10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 밥쌀용 위반 사항은 유형별로 원산지 거짓표시가 73건, 원산지 미표시가 24건으로 나타남.

표 2-5. 수입쌀 원산지 표시 관련 위반 현황

연 도	전체		밥쌀용		가공용	
	건수	물량(톤)	건수	물량(톤)	건수	물량(톤)
2015	124	396	100	74	24	322
2014	310	543	298	300	12	243
2013	320	974	310	770	10	205
2012	386	3,748	372	3,438	14	312
2011	148	1,781	131	1,687	17	95

주: 2015년은 8월까지의 위반 현황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5. 8. 19.

5. 쌀 수출입 현황

5.1. 쌀 수입 현황

5.1.1. 관세화 전환 이전 의무수입량

- 우리나라의 쌀 수입은 2015년 관세화 전환 이전까지는 의무수입물량을 국영무역 방식으로 도입하는 구조였음.
- UR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쌀에 대한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가로 1995년부터 매년 가공용으로 일정 물량을 의무수입하기로 합의함.
 - 1995년 국내 소비의 1%에 해당하는 물량을 시작으로 2004년에는 국내 소비의 4%까지의 물량을 5%의 관세로 수입하기로 함.

표 2-6. UR협상 이후 쌀 의무수입 계획량

단위: 천 톤

구 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의무수입물량	51.3	64.1	77.0	98.8	102.6	102.6	128.3	153.9	179.6	205.3
소비량 대비 (%)	1.0	1.25	1.5	1.75	2.0	2.0	2.5	3.0	3.5	4.0

주: 도입계획 물량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는 2004년 쌀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까지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였으며, 10년간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는 대가로 의무수입량을 2005년 22만 6천 톤에서 2014년 40만 9천 톤까지 증량하고 관세는 기존의 5%를 유지하기로 결정함.
- 2004년까지의 의무수입물량은 가공용으로 제한되었으나, 2005년부터는 총 의무수입물량 중 일정 물량을 밥쌀용으로 수입함.
 - 밥쌀용 쌀 의무수입물량은 2005년 전체 수입량의 10%에서 2014년 30% 수준인 12만 3천 톤까지 증량하기로 합의함.

표 2-7. 2004년 쌀 재협상 이후 의무수입 계획량

단위: 천 톤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CSQ	205.2	205.2	205.2	205.2	205.2	205.2	205.2	205.2	205.2	205.2
-중국	116.2	116.2	116.2	116.2	116.2	116.2	116.2	116.2	116.2	116.2
-미국	50.1	50.1	50.1	50.1	50.1	50.1	50.1	50.1	50.1	50.1
-태국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호주	9.0	9.0	9.0	9.0	9.0	9.0	9.0	9.0	9.0	9.0
MFN	20.3	40.7	61.0	81.4	101.7	122.1	142.4	162.8	183.1	203.5
총계	225.6	245.9	266.3	286.6	307.0	327.3	347.7	368.0	388.4	408.7
(밥쌀용)	22.6	34.4	47.9	63.1	79.8	98.2	104.3	110.4	116.5	122.6
(비율)	10%	14%	18%	22%	26%	30%	30%	30%	30%	30%

주: 도입계획 물량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5.1.2. 관세화 이후 쌀 수입 현황

○ 2015년 1월 1일부로 20년간의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고, 관세화가 시행되어 513%의 관세를 부담하면 누구나 외국산 쌀을 수입할 수 있게 되었으나, 현재까지 의무수입량 이외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된 쌀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는 WTO 협정문을 근거로 관세율 513%(종가세)를 산출하여 2014년 9월 WTO에 통보함.
- 기존 의무수입량 40만 9천 톤은 관세화 전환과 상관없이 5%의 관세를 적용하여 영구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물량임.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로 도입된 의무수입량 외 수입쌀 물량은 4,729kg(2,431건, 수입신고일 기준)이며 이중 관세 513%를 부담하고 국내로 수입된 쌀은 464kg(22건), 면세물량은 4,265kg으로 집계됨(농업전망 2016).
- 513%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된 쌀 대부분은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자가 소비용이거나 국내 이주 시 이삿짐에 포함되어 수입된 물량 또는 자가생플용인 것으로 추정됨.

표 2-8. 관세화 이후 의무수입량 이외의 쌀 수입 동향

단위: kg

구분 (2015년 기준)	513% 과세		면세		합계	
	물량	건수	물량	건수	물량	건수
1월	5	1	505	199	510	200
2월	40	2	301	188	341	190
3월	18	1	344	237	362	238
4월	192	2	352	247	544	249
5월	-	-	290	203	298	204
6월	8	1	574	215	574	215
7월	60	3	436	162	496	165
8월	2	1	233	202	235	203
9월	-	-	485	260	485	260
10월	91	6	351	251	442	257
11월	48	5	394	245	442	250
합계	464	22	4,265	2,409	4,729	2,4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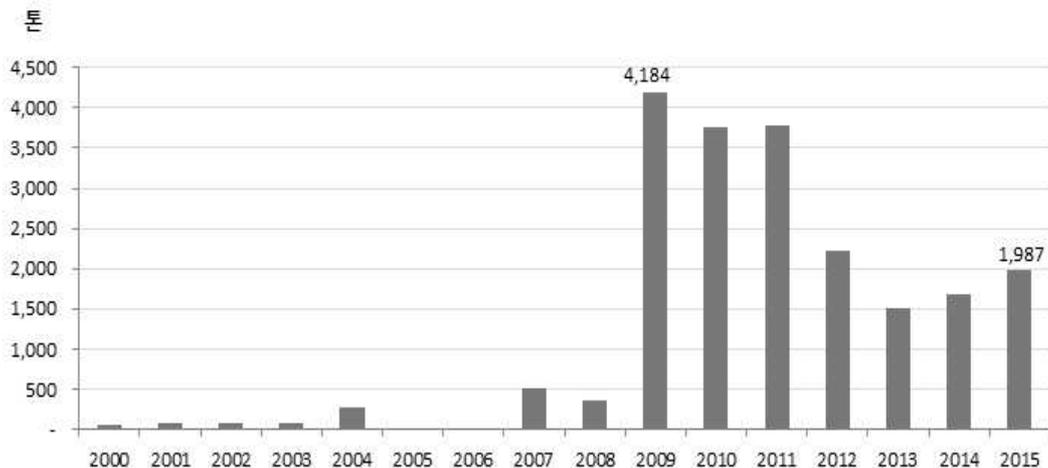
자료: 농업전망 2016 재인용.

5.2. 쌀 수출 현황

5.2.1. 쌀 수출의 한계

- 과거 우리나라는 쌀 수출 관련 정책과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일부 물량을 수출해 왔으나, 관세화 유예로 인한 제약과 국내산 가격 경쟁력 저위로 수출 물량 확대에는 한계가 있었음.
 - UR 협정에 따라 관세화를 유예할 경우, 의무수입량 허용을 비롯한 수출 보조에 대한 금지 조치가 취해짐.
- 우리나라 쌀 수출 실적은 2007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9년 4,184톤까지 증가하였으나, 2010년부터 흉작과 쌀 가격 상승 등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3년 1,517톤까지 감소한 후 최근 다시 증가추세이나 총수출 물량은 쌀 생산량 및 수입량에 비해 매우 미미함.
 - 2015년 쌀 수출량은 1,987톤으로 전년대비 18.0%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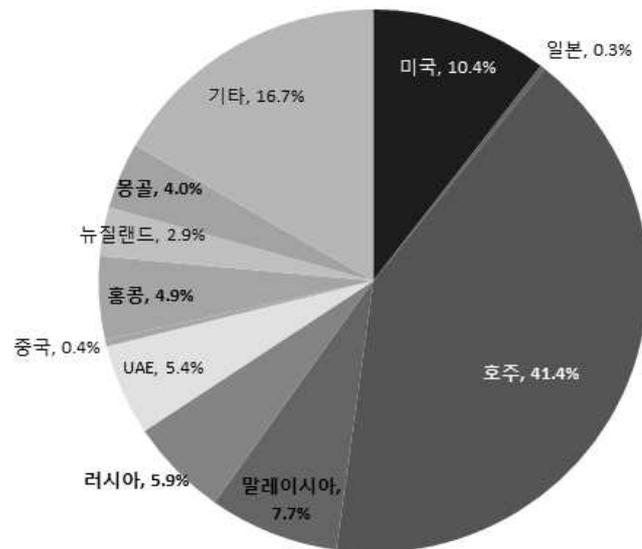
그림 2-12. 국내산 쌀 수출량 추이



자료: 관세청.

- 최근 3년간 국가별 쌀 수출 물량 비중은 호주가 4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미국과 말레이시아의 비중이 각각 10.4%와 7.7%로 높게 나타남.
 - 동 기간 인접 국가인 중국과 일본으로의 수출 비중은 각각 0.4%와 0.3%로 매우 낮은 수준임.

그림 2-13. 국가별 수출물량 비중(2013~2015년 평균)



자료: 관세청.

5.2.2. 최근 중국 등으로 수출 기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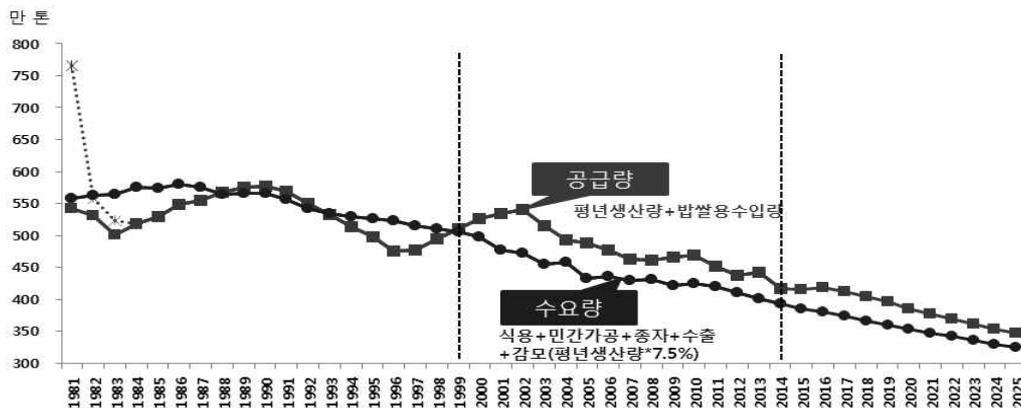
- 2015년 관세화 전환 이후 수출에 대한 제약이 완화됨에 따라 정부는 고품질·기능성 쌀을 생산하는 ‘쌀 수출 전문단지’를 지정하여 쌀 수출을 확대하고, 대호간척지 수출용 쌀 시범단지를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으로 400톤 물량의 수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2015년 10월 31일 정부는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국과 한·중 수입 및 수출용 쌀의 검역검사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여 우리 쌀의 중국 진출 기반을 마련함(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5).
 - 그동안 정부는 우리 쌀의 대중국 수출을 위해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수입 허용을 촉구해 왔으나 검역 문제로 수출이 불가능했음.
-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중국 시장 내 우리 쌀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위주의 브랜드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구축한다면, 향후 중국 시장 내 국산 쌀 수요는 증가할 가능성이 큼.

6. 쌀 산업 문제와 자조금의 역할

- 쌀 산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과잉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비 감소가 생산 감소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며, 이러한 현상은 중장기적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2-14. 중장기 쌀 공급량과 수요량 전망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토론회 자료(2015. 12. 9).

- 소비지 시장에서 쌀 판매 감소는 산지유통 주체인 **RPC** 및 도정업체의 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향후 벼 재배농가의 판로 확보 및 소득보전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 따라서 쌀 산업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수급불균형 해소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나, 농가의 전업이 쉽지 않고 논이 유일한 생산수단인 개별 농가가 단기간에 생산량을 소비량 감소폭에 준하여 줄이기는 어려움.
- 그러므로 안정적인 수급조절 및 쌀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자 스스로 자조금을 도입하여 적극적인 소비촉진 활동을 통해 소비 감소 속도를 늦추는 한편, 중장기적인 수급안정을 위해 농가 단위가 아닌 전국단위의 생산 조절 활동을 추진해야 함.
- 또한, 관세화 전환으로 앞으로 수입쌀의 국내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 쌀 부정유통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자조금을 통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의 단속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중 FTA 체결로 대규모 쌀 소비지인 중국 수출 기반이 마련되었으므로 자조금을 활용하여 중국 시장 내 국내산 쌀의 신뢰도 확보 및 고품질·안전성과 연관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여 중국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제 3 장

국내외 주요 자조금 사례

1. 우유의무자조금

1.1. 사업 실시배경 및 목적

- 1997년 IMF 사태 이후, 우유소비의 감소가 이어짐에 따라 낙농업계에는 우유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 방안이 요구되고 있었음(박종수 외, 2001). 이 가운데 1998년 낙농육우협회는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림부의 ‘원유가 5% 인하방침’을 거부하는 반면, 낙농자조금 시행 계획을 실시함.
 - 이는 자조금사업을 통해 소비홍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수급 안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임(축산경제).
- 이로 인해 낙농자조금사업¹은 한국낙농육우협회 주관 하에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낙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임의자조금’ 형태로 추진됨.
 - 1999년 원유 kg당 5원씩을 납부하도록 한 낙농자조금사업은, 첫해에 전체 농가의 83%가 동참하였으며, 자조금 조성액은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약 25억에 달함.

¹ 2014년 1월 낙농자조금에서 우유자조금으로 명칭이 변경됨(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 그러나 첫째에 83%에 달했던 농가참여율이 2004년에는 70%를 가까스로 웃도는 등, 시간이 지나면서 무임승차를 비롯한 임의자조금 제도의 한계성이 점차 드러나게 됨(김민경, 2008).
- 한편 2002년도에 제정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시행된 양돈과 한우 부문의 의무자조금사업은 소비촉진 광고사업을 활발히 시행하였고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함. 이에 따라 2006년 5월 1일부터 원유 1L당 2원씩 거출하는 의무자조금사업을 실시함.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부록 1에 제시됨.
- 우유자조금사업의 목적은 첫째, 우유소비확대 기반구축 등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우유수급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며, 둘째, 국산 우유의 대국민 이미지 제고를 통해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낙농가 실질소득을 증대하는 것임(정찬진, 2013).
- 우유자조금사업의 설립목적(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 낙농가 스스로 낙농산업을 보호하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 우유소비를 촉진
 - 국산 우유의 안정성과 신선함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우유 소비촉진을 유도
 - 우유 소비촉진을 통한 낙농산업 발전과 낙농가의 소득을 향상
 - 국민건강을 위한 우유의 품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무한 경쟁체제하에서 수입유제품과의 경쟁력을 제고

1.2. 거출 방식

- 1999년 kg당 1원씩 임의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시작된 낙농자조금사업은 현재 거출금액을 ℓ 당 2원으로 정하여 실시되고 있음.
- 거출 방식은 한우, 양돈과 마찬가지로 1차 유통·가공업자가 농가에서 거출한 자조금을 자조금관리위원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우유자조금의 경우 유업체, 집유 협동조합, 낙우회 등에 자조금 거출을 위탁함.
 - 축산물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에 따라 허가받은 곳에서만 도살·처리, 집유, 가공·포장 및 보관이 가능하며, 시행규칙 제54조에 의해 축산물의 생산실적을 보고해야 하므로 유통 경로 파악이 용이함. 따라서 유통·가공업자를 통한 거출이 효율적임.

표 3-1. 우유자조금 거출 방식 및 규모

거출 방식	거출 규모	도입('15 조성액)
집유업체 위탁	2원/우유 1ℓ	'06(112억 원)

자료: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 행정규칙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제21조」에 따라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수납기관별 월간 집유실적을 수집하여 수납기관별로 거출금을 월 단위로 부과하고, 매달 말일까지 전월 분의 자조금을 납입하지 않은 수납기관에 대해 자조금 납부실적과 미납자 인적사항 및 미납사유를 조사함.
 - 납부가 지연된 기간만큼 하루에 1만분의 3의 단리를 적용하여 자조금의 납부를 고지하며,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축산업자, 중도매인 및 식육업자에 대한 미납 자조금은 미납안내서를 통해 위원회에서 직접 징수함.

- 수납기관은 매월 5일까지 전월의 월간 집유실적을 관리위원회로 통보해야 하며 거출금 수납일정은 아래 <표 3-2>와 같음.

표 3-2. 우유자조금 납부 과정

구분	집유일	납부일	집유실적통보	징수수료
1차유대	01일~15일	매월 말일까지	익월 5일 (전월집유실적)	원유 l *0.06원
2차유대	16일~말일	익월 15일까지		

자료: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 수납기관은 축산업자 등이 거출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집유(集乳) 거부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납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업무 수탁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1.3. 거출 현황

- 2007~13년 계획대비 우유자조금 조성 비율은 평균 95%임. 2010년과 2011년 국고보조 감소와 함께 구제역의 여파로 계획대비 조성액 비율이 80%대로 하락하였으나, 2012년 구제역 여파에 따른 후속 증산 정책으로 거출액이 크게 증가함.
- 우유자조금 예측은 전년 실적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해당연도 조성액 규모가 예측과 상이하다고 하여 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님.

표 3-3. 연도별 우유자조금 거출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국고보조	4,200 (100)	4,200 (100)	3,987 (90.6)	3,618 (82.2)	2,520 (67.4)	3,560 (95.2)	3,488 (99.1)
농가거출	4,278 (101.9)	4,168 (96.9)	4,127 (93.8)	4,038 (91.8)	3,667 (98.1)	4,070 (107.7)	4,054 (97.7)
기타	274 (100.3)	566 (100.4)	434 (112.8)	559 (103.7)	579 (103.6)	1,602 (103.4)	1,045 (76.4)
합계	8,752 (100.9)	8,934 (98.6)	8,548 (93.1)	8,215 (88)	6,766 (84.2)	9,232 (101.8)	8,586 (95)

주: ()는 계획대비 비율(%)임.

자료: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1.4. 자조금 사용실적 및 효과

○ 우유소비촉진을 위한 TV/라디오 광고 및 홍보는 우유자조금의 주된 사업으로, 1999년 이후 꾸준히 지속됨. 의무자조금이 시작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광고 및 홍보에 평균적으로 사용된 자조금은 전체의 60%(약 45억 원) 수준임.

- 이 비중은 2011년에 30% 미만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에는 약 50%에 달함.
- 한편 ‘교육 및 정보제공’은 두 번째로 지출비중이 큰 항목으로, 2013년 전체 자조금의 약 40%(30억 원)를 차지함.

표 3-4. 연도별 우유자조금 사용실적

단위 : 백만 원, %

구분	소비홍보	교육 및 정보제공	자조금 거출홍보	조사연구	징수 수수료	운영비	기타	합계
2013	3,833 (92.9)	3,021 (80.7)	48 (96.3)	131 (93.6)	122 (97.8)	511 (86.6)	12 (87.7)	7,677 (85)
비율	49.9	39.3	0.6	1.7	1.6	6.7	0.2	100.0
2012	3,984 (97.7)	3,129 (96.1)	46 (91.2)	470 (95.9)	122 (99.2)	464 (90.6)		8,214 (90.6)
비율	48.5	38.1	0.6	5.7	1.5	5.6		100.0
2011	1,496 (48.6)	2,985 (82)	41 (82.5)	146 (43)	110 (98.1)	439 (89.6)		5,217 (64.9)
비율	28.7	57.2	0.8	2.8	2.1	8.4		100.0
2010	4,352 (96.6)	2,467 (79)	38 (76.4)	276 (93.8)	121 (91.8)	402 (94)		7,656 (82)
비율	56.8	32.2	0.5	3.6	1.6	5.3		100.0
2009	4,592 (96.3)	1,967 (81.7)	136 (67.5)	183 (42.5)	124 (93.8)	408 (93.8)	600 (100)	8,009 (87.2)
비율	57.3	24.6	1.7	2.3	1.5	5.1	7.5	100.0
2008	6,990 (99.1)	815 (86.9)	49 (98.3)	192 (95.9)	125 (96.9)	378 (89.9)		8,549 (94.3)
비율	81.8	9.5	0.6	2.2	1.5	4.4		100.0
2007	7,315 (99.5)	393 (89.5)		206 (98.3)	128 (98.7)	362 (96.4)		8,752 (100.9)
비율	87.0	4.7	0.0	2.5	1.5	4.3		100.0
2006	3,405	257	15	288	3	237		4,275
비율	81.0	6.1	0.4	6.8	0.1	5.6		100.0

주: ()는 계획대비 비율(%)임. 기타는 대의원선거 비용(2013년) 및 임대수수료(2009년)임.
자료: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 우유자조금의 일반광고와 같은 판촉활동에 의한 수요변화를 측정된 결과 우유자조금의 소비촉진활동은 우유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2001년 이후 백색시유 1인당 소비량 감소로 인한 공급과잉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우유자조금은 우유 일반광고를 통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원유수급을 안정화에 크게 기여함(정찬진, 2013).

- 1999년 광고·홍보활동으로 인한 우유 매출의 증가액은 7,469백만 원인 것으로 추정됨. 이를 투자 효과 면에서 본다면 자조금 1원에 최소한 4.5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되어(박종수 외, 2001), 우유자조금은 낙농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됨.

2. 한돈의무자조금

1.1. 실시배경 및 목적

- WTO 체제 출범에 따른 축산물 시장 개방으로 양돈 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자, 양돈 농가들은 자율적인 판로확대, 수급조절, 가격안정을 통해 양돈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자조금제도를 도입함(국가기록원).
- 이러한 농가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대한양돈협회는 1985년 미국 축산자조금제도 사찰단 파견을 시작으로, 1992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임의자조금사업 승인을 받아 자조금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안정적으로 정착되지는 못함.
- 그 후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2002년 12월 대한양돈협회와 농협중앙회는 공동으로 의무자조금사업 추진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고, 의무자조금제도 도입을 준비하기 시작함.
- 2003년 5월부터는 대한양돈협회와 농협이 함께 참여하는 양돈자조금공동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동준비위원회의 주관으로 동년 11월에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193명의 대의원을 선출하고, 12월 19일에는 창립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의무자조금의 거출여부와 거출금액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여 의무자조금을 거출하기로 결정함.

- 총 대의원의 83%인 166명의 대의원이 투표에 참여하여 94%인 156명이 의무자조금제도의 도입을 찬성하였고, 참석한 대의원의 만장일치로 양돈농가가 생산·판매하는 돼지 1두당 400원씩의 자조금을 거출하기로 결정함.
- 관리위원회는 준비과정을 거쳐 2004년 4월 1일부터 농가들이 도축장에 돼지를 출하할 때 비육돈 1두당 400원씩을 거출하는 양돈의무자조금을 본격적으로 시행함(국가기록원, 한돈자조금).
- 양돈의무자조금은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의무자조금제도의 도입에 성공한 경우임.
 - 양돈의무자조금은 2011년 4월 27일 한돈의무자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한돈과 수입육의 차별화를 도모함.
- 한돈자조금사업의 설립목적(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 소비촉진 홍보 및 판로확대
 - 계도교육 및 정보제공
 - 조사와 연구
 -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 자율적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 신제품 개발 및 수출 활성화

1.2. 거출 방식

- 2004년 의무자조금 시작 시 비육돈 1두당 400원을 거출하던 자조금은 물가상승과 자조금 운용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2008년 600원, 2011년 800원, 2015년 1,100원으로 인상됨.

표 3-5. 한돈의무자조금 거출 방식 및 규모

거출 방식	거출 규모 및 대상	도입('14 조성액)
도축장 위탁	1,100원/두	'04(203억 원)

자료: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농수축산신문.

- 한돈자조금의 거출 방식은 한우, 우유와 같이 1차 유통·가공업자가 농가에서 거출한 자조금을 '자조금관리위원회'에 송금하는 방식임. 등급판정을 받은 돼지에 대하여 의무징수하며 도축장에서 위탁 거출함.

표 3-6. 한돈자조금 연체금 및 징수수료

연체금	징수수료
납부가 지연된 금액에 하루 3/10,000의 단리를 적용하여 부과	거출금의 7%(56원/두) 이내 범위에서 지급

자료: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 징수수료는 자조금을 납부하는 도축장에 한하여 거출금의 7%(56원/두) 이내 범위에서 지급함.
- 연체금은 납부가 지연된 금액에 하루 3/10,000의 단리를 적용하여 부과하며 도축장은 자조금 미납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도록 납부현황 자료를 시·도지사 및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 작업장별 송금액은 「당월등급판정두수×(1,100원/두-징수수료)+연체금」이며, 연체금은 징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닌 작업장에서 송금받는 방식임.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납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업무 수탁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1.3. 거출 현황

표 3-7. 연도별 한돈자조금 거출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농가거출금	7,607 (102.7)	7,751 (101.5)	8,473 (104.1)	8,025 (106.9)	11,092 (103)	12,600 (104.3)	12,337 (110.1)
정부지원금	7,400 (100)	7,073 (95.6)	7,400 (100)	7,379 (99.7)	6,400 (100)	6,048 (100)	5,033 (100)
기타	1,079 (94.8)	923 (92.3)	1,678 (107.1)	2,120 (106.2)	1,972 (100.5)	1,462 (104.5)	2,974 (106)
합 계	16,085 (100.9)	15,747 (98.2)	17,552 (102.6)	17,524 (103.7)	19,464 (101.7)	20,110 (103)	20,390 (106.8)

주: ()는 계획 대비 비율(%)임.

자료: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 한돈자조금은 의무자조금 시행 이후 안정적인 거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축장에서의 원활한 거출('14년 97%, '15년 94%)을 통해 정부의 매칭펀드2 지원 또한 2009년을 제외하고는 지원계획의 100%를 지원받음.

2 중앙정부가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때 자체노력에 연계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

- 한돈자조금 조성규모는 2008년 160억 원에서 연평균 4%씩 증가하여 2014년 200억 원 규모에 이르렀으며, 계획대비 조성율은 200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100% 이상에 달함.
 - 이는 거출계획(모돈수×MSY×0.95×1,000원)에서 거출율을 95%로 설정한 점과 계획대비 실제 출하두수의 증가, 농가의 높은 거출율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1.4. 거출금 사용실적 및 효과

- 한돈자조금사업은 크게 소비홍보, 유통구조개선, 교육 및 정보제공, 조사연구 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한돈의무자조금의 용도별 지출은 2004년 의무자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4년까지 2013년을 제외하고는 소비홍보 사업에 대한 지출이 가장 많았으며, 2010년 이후 2014년까지 소비홍보와 유통구조개선에 전체 예산의 60% 이상을 사용하고 있음.
 - 2014년 용도별 지출비중은 소비홍보가 42.1%로 가장 높았고, 유통구조개선(24.3%), 교육 및 정보제공(19.8%), 운영관리(5.7%), 징수수료(5.1%), 조사연구(2.9%) 순임.
 - 조사연구의 경우 2012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용실적이 네 번째로 많은 항목이었으나, 이후 급감하여 14년에는 사용실적이 가장 적었음.

표 3-8. 연도별 한돈자조금 사용실적

단위 : 백만 원, %

구분	소비 홍보	유통 개선	교육 및 정보제공	조사 연구	징수 수수료	운영 관리	거출 홍보	기타	합 계
2014	6,614 (99.8)	3,827 (62.3)	3,117 (91.8)	456 (83.6)	809 (96.2)	898 (82.2)	-	-	15,720 (82.4)
비율	42.1	24.3	19.8	2.9	5.1	5.7	-	-	100.0
2013	5,624 (98.7)	6,546 (83.7)	2,895 (86.2)	663 (88.9)	816 (97.3)	890 (85.1)	-	-	17,435 (89.3)
비율	32.3	37.5	16.6	3.8	4.7	5.1	-	-	100.0
2012	7,584 (99.5)	5,200 (95.3)	2,930 (93.6)	1,035 (89.5)	739 (102.9)	824 (83.0)	-	-	18,312 (95.7)
비율	41.4	28.4	16.0	5.7	4.0	4.5	-	-	100.0
2011	8,488 (99.3)	2,242 (97.3)	2,981 (88.5)	1,008 (91)	363 (100.3)	624 (93.7)	-	78 (92.8)	15,783 (93.4)
비율	53.8	14.2	18.9	6.4	2.3	4.0	-	0.5	100.0
2010	7,556 (98.3)	2,506 (96.2)	3,516 (91)	991 (94.1)	379 (100.6)	607 (87.9)	-	-	15,555 (90.9)
비율	48.6	16.1	22.6	6.4	2.4	3.9	-	-	100.0
2009	8,049 (97.6)	-	4,102 (88.3)	934 (64.1)	356 (93.2)	573 (80.2)	110 (70.8)	-	14,124 (88.1)
비율	57.0	-	29.0	6.6	2.5	4.1	0.8	-	100.0
2008	9,272 (99.7)	-	3,542 (95.2)	1,382 (99.5)	346 (93.3)	533 (85.8)	135 (98.6)	-	15,210 (95.4)
비율	61.0	-	23.3	9.1	2.3	3.5	0.9	-	100.0

주: ()는 계획대비 비율(%)임. 기타는 선거비용이 76백만 원, 예비비 사용이 2백만 원임.
자료: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 한돈의무자조금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 촉진 활동의 핵심인 광고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 광고비 지출에 대한 평균투자수익은 약 50.78원으로 나타나 광고비 1원당 평균 50.78원의 수익 증가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노경상 외, 2014).

- 또한,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한돈농가를 대상으로 자조금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0.0%가 한돈의무자조금 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함(노경상 외, 2014).
- 따라서 한돈의무자조금은 경제성 평가에서도 한돈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가들 또한, 의무자조금제도의 지속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3. 한우의무자조금

3.1. 사업 실시배경 및 목적

- 다른 축종들과는 달리 한우 부문에서는 임의자조금제도를 거치지 않고 「축산물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의무자조금제도를 직접 도입함.
- 한우협회와 농협중앙회는 2003년 1월 20일 법 규정에 따라 한우자조금설치를 위한 세부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고, 2003년 8월 13일에 한우자조금설치를 위한 공동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하여 공동준비위원장의 선출과 위원회의 운영규약 등을 제정함.
- 이후 2004년 8월 25일부터 11월 11일까지 지역별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240명의 대의원을 선출하였으며, 2005년 2월 16일 대의원 총회를 통해 등급판정을 받은 한우 1두당 2만 원씩의 의무자조금을 거출하기로 결정함(5월 1일부터 거출).

- 한우자조금사업의 설립목적(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 매체를 통한 한우홍보활동 진행
 - 다양한 홍보를 통해 소비촉진 유도
 - 대대적인 할인판매 행사를 통한 수급안정 기여
 - 전국적인 한우유통 감시단의 활동으로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 농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고급육 생산·정보제공
 - 한우의 우수성과 안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개발

1.2. 거출 방식

- 거출금액은 한우의무자조금 조성 당시 한우 농가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대의원 총회 투표결과 1두당 20,000원씩을 거출하기로 함.
- 한우자조금의 거출 방식 또한 1차 유통·가공업자가 농가에서 거출한 자조금을 자조금관리위원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등급판정을 받은 한우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징수하며, 도축장에서 거출금 징수를 위탁받아 거출함.

표 3-9. 한우 의무자조금 거출 방식 및 규모

거출 방식	거출 규모 및 대상	도입('15 조성액)
도축장 위탁	20,000원/두	'05(381억 원)

자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 한우자조금 납부 고지서는 도축일, 매월 10일 이전에 발송되며, 도축장은 동월 20일까지 거출금을 납부해야함.

표 3-10. 한우자조금 연체금 및 징수수료

연체금 및 징수수료		
거출금의 5/100 (1,000원/두)	납기일내 100% 거출	그 외
	수수료의 7%지급	수수료의 5% 차등지급

자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 한우자조금의 경우 도축업자는 「당월등급판정두수×20,000원」을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 송금하고,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거출율, 납기일을 고려하여 도축장에 수수료를 지급함.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납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업무 수탁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1.3. 거출 현황

- 2005년 5월부터 시행된 한우 의무자조금의 거출 사업은 2006년 6월에 거출율³ 90%(농수축산신문)를 기점으로 2015년 98.9%에 이르기까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거출금 조성규모는 2008~2014년 연평균 8%씩 증가함.
- 과거 일부 지역에서 저조한 자조금 거출율을 보였으나, 이는 한우의 특성상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유통과정 추적이 용이하므로 유통경로 상의 무임승차가 아닌 거출금 미납에 기인한 현상이었음. 현재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미납 도축장에 대한 고소·고발 등의 강경한 대체로 도축장들의 자조금 납입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3 자조금 고지금액에 대한 도축장의 납입금액 비율.

표 3-11. 연도별 한우자조금 거출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농가 거출금	10,787 (119.9)	12,567 (130.9)	11,911 (95.4)	13,487 (108.1)	16,732 (134.1)	18,983 (105.2)	18,611 (111.7)
정부지원금	8,000 (100)	8,278 (92)	8,603 (95.6)	9,000 (100)	7,724 (99.9)	7,280 (100)	6,067 (99.3)
기타	5,054	5,524	10,073	10,496	8,759	10,394	10,391
합 계	23,841 (109.2)	26,369 (117.7)	30,587 (98.1)	32,983 (104)	33,215 (116.1)	36,657 (103.3)	35,070 (106.5)

주: ()는 계획 대비 비율(%)임.

자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1.4. 거출금 사용실적 및 효과

○ 한우자조금사업은 크게 소비홍보, 수급안정, 유통구조개선, 교육 및 정보제공, 조사연구사업으로 구분됨. 2008~2014년 징수수료와 운영관리비를 제외한 한우자조금 평균 지출비율을 보면 소비홍보(29%), 교육 및 정보제공(13%), 수급안정(11%), 유통구조개선(4%), 조사연구(2%) 순으로 높았음. 최근 들어 소비홍보와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에 대한 지출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수급안정에 대한 지출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임.

- 자조금 전체 사용실적 중 수급안정에 대한 지출 비중은 최근 3년간 (2012~14년) 20%를 웃돌고 있으며, 이는 최근 들어 수급안정을 위한 한우 나눔행사, 한우의 날 행사, 한우 소비촉진행사 등 다양한 행사들이 늘어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표 3-12. 연도별 한우자조금 사용실적

단위 : 백만 원

구분	소비 홍보	수급 안정	유통 구조개선	교육· 정보제공	조사 연구	징수 수수료	운영 관리비	기타	합계
2014	7,115 (97.7)	10,002 (90.8)	715 (79.9)	3,151 (72.8)	901 (81.5)	1,194 (98.4)	1,035 (78.2)	0 (0)	24,112 (73.2)
비율	14.8	20.7	1.5	6.5	1.9	2.5	2.1	0.0	
2013	7,827 (98.5)	12,026 (85)	587 (89.5)	2,930 (83.3)	862 (70.1)	1,191 (99.6)	1,075 (83.3)	0(0)	26,498 (74.7)
비율	14.8	22.7	1.1	5.5	1.6	2.2	2.0	0.0	
2012	7,107 (99.8)	10,282 (79.6)	487 (62)	2,609 (68.5)	700 (88.6)	859 (101.3)	976 (82.3)	49 (16.2)	23,068 (80.6)
비율	15.4	22.3	1.1	5.7	1.5	1.9	2.1	0.1	
2011	7,775 (97.8)	1 (2.2)	9192 (95)	5,232 (92.4)	884 (88.1)	611 (81.6)	895 (79.1)	0(0)	24,590 (77.5)
비율	15.8	0.0	18.7	10.6	1.8	1.2	1.8	-	
2010	9,325 (94.6)	5,000 (100)	3,614 (86.4)	5,099 (83.6)	932 (87.4)	539 (93.9)	839 (83.1)	-	25,348 (81.3)
비율	20.4	10.9	7.9	11.2	2.0	1.2	1.8	-	
2009	9,350 (93.3)	-	-	5,255 (72.7)	766 (51.8)	563 (89.3)	-	-	16,557 (73.9)
비율	56.5	-	-	31.7	4.6	3.4	-	-	
2008	12,830 (95.8)	-	-	4,085 (89.7)	202 (41)	482 (96.4)	-	379 (75.9)	18,558 (85)
비율	69.1	-	-	22.0	1.1	2.6	-	2.0	

주: ()는 계획대비 비율(%)임, 기타는 선거비용임.

자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 한우자조금사업의 경제적 성과 분석을 위해 2005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사업비 자료를 토대로 투자수익율을 계산한 결과, 광고비의 탄력치는 0.0231로 추정되어 광고비 지출액이 1% 증가할 때, 한우소비량은 0.02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광고에 대한 평균투자수익을 계산한 결과, 광고비 1원당 평균 17.58원의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노경상 외, 2015).

- 한우자조금사업의 ‘한우 이미지 개선 및 소비확대 기여도’에 대한 농가 설문조사 결과 21.3%가 ‘매우 기여하였다’ 고 응답하였고, 47.7%가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 고 응답하여, 조사농가 전체의 69.0%가 한우자조금 사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노경상 외, 2015).
- 또한,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자조금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5.6%가 한돈의무자조금 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한우 이미지 개선 및 소비확대 기여도’에 대한 농가 설문조사 결과 21.3%가 ‘매우 기여하였다’ 고 응답하였고, 47.7%가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 고 응답하여, 조사농가 전체의 69.0%가 한우자조금 사업에 긍정적인 평가를 보임(노경상 외, 2015).

4. 닭고기의무자조금

1.1. 사업 실시배경 및 목적

- 1995년 임의자조금으로 시작된 닭고기 자조금은 대한양계협회와 한국계육협회와의 역할분담에 대한 문제로 2003년 거출이 중단됨(국가기록원). 그러나 WTO 체제 출범 및 FTA 체결로 인한 시장 개방 확대, 국제곡물가격과 물류비 상승 등으로 농가 수익성이 악화되고 산업의 위기감이 증대됨에 따라 2004년부터 의무자조금 도입을 추진하여 2009년에 본격적인 의무자조금사업을 실시함(국가기록원).

- 닭고기자조금사업의 설립목적(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 농가와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정보 제공으로 육계농가의 자질 향상에 기여
 - 국내산 닭고기 소비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육계산업 기반조성
 - 소비자 홍보·교육·정보제공을 통한 소비확대

1.2. 거출 방식

- 닭고기의무자조금 거출 방식은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가 도계장에 거출금 징수를 위탁하면, 도계장이 도축되는 물량 전수에 대해 <표 3-13>과 같이 농가로부터 거출금을 의무 징수한 뒤,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에 송금하는 방식임.
-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는 도계장에 거출금의 5/100에 해당하는 징수수료를 납부함.

표 3-13. 닭고기 의무자조금 거출 대상 및 규모

거출 방식	거출 규모 및 대상	도입('13 조성액)
도계장 위탁	육계 5원/수, 삼계 3원/수, 토종닭 10원/수, 종계 30원/수	'09(26억 원)

자료: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표 3-14. 닭고기 의무자조금 징수수료 및 고지서발송, 수납일

징수수료	고지서발송	수납일
거출금의 5/100	도계일, 매월 1일 이전	익월 10일 까지

자료: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1.3. 거출 현황

- 2009~2013년 닭고기 의무자조금의 계획대비 거출실적은 평균 85%로 저조하며 자조금 조성계획(8억 수(1년 육계기준) \times 0.7)에서 거출율을 70%로 계산한 점을 고려할 때 실제 거출율은 7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도계장이 없는 유사인티나 프랜차이즈 회사의 경우 자조금을 거출할 수 없어 의무자조금 거출에 대한 형평성 논란 및 충분한 거출금 조성이 어려운 형편임(한국농어민신문, 2015).
- 하지만 2015년 8월 1일부터 의무자조금 납부에 소극적이던 계열업체들도 의무자조금 납부를 시작하였으며, 미납금 납부 증가 및 매칭펀드 지원이 커짐에 따라 안정적인 자조금사업 기반이 조성되는 중임.

표 3-15. 연도별 닭고기자조금 거출 현황

단위 : 백만 원

	2009	2010	2011	2012	2013
농가거출	338 (96.6)	979 (118.9)	636 (47.8)	1,240 (104.3)	1,112 (78.8)
국고보조	310 (88.7)	730 (85.9)	892 (55.5)	920 (93.9)	842 (73.2)
기타	0 (0)	26 (101.3)	257 (93.2)	2 (0)	92 (0)
합계	649 (92.7)	1,736 (102.1)	1,785 (55.5)	2,162 (99.7)	2,045 (79.9)

주: ()는 계획 대비 비율(%)임.
자료: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1.4. 거출금 사용실적

- 2013년 닭고기자조금사업 지출 비율은 수급안정, 징수수료, 선거, 기타비용을 제외하고 소비홍보 53%, 교육 및 정보제공 27%, 운영비 8%, 조사연구 8% 순으로 나타남. 닭고기의 경우 의무자조금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고 조성액도 다른 축종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에 현재 닭고기자조금은 대부분 소비홍보와 교육 및 정보제공 등 자조금의 가장 본원적인 활동에만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표 3-16. 2013년 닭고기자조금 사용실적

단위 : 백만 원, %

구분	실적	실적 비율
소비홍보	929 (99.9)	53.0
교육 및 정보제공	482 (66)	27.5
수급안정	2 (0.7)	0.1
조사연구	144 (96.1)	8.2
징수수료	40 (66.1)	2.3
선거	7 (21.2)	0.4
운영비	146 (71.1)	8.3
기타	4 (0)	0.2
합 계	1,754 (68.5)	100.0

주: ()는 계획대비 비율(%)임, 기타는 운영외 비용임.
 자료: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5. 인삼의무자조금

1.1. 사업 실시배경 및 목적

- 농산물은 축산물과 달리 유통단계별 구심점이 미약하고, 거출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임의자조금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임의자조금의 경우 일부 생산자만 참여하여 자조금 거출규모가 작고, 무임승차문제 해소가 어려워 자조금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5).
- 한편 축산 부문의 의무자조금제도가 소비촉진 및 수급안정 등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에 따라, 농산물 부문에서도 의무자조금제도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됨.
- 특히, 인삼 산업은 최근 들어 소비감소와 함께 WTO/DDA 협상 및 FTA 체결로 인한 정부의 직접적 시장개입 감소와 시장개방 확대로 신규 식재면적 감소, 수출 정체, 홍삼 시장 점유율 하락, 재고 증가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2012년부터 의무자조금 도입에 관한 논의를 시작함. 이후 2013년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발효에 힘입어 2015년 원예 농산물 중 최초로 의무자조금제도를 도입함.

- 인삼의무자조금사업의 설치목적(한국인삼협회)은 다음과 같음.
 - WTO/DDA 협정 및 FTA 체결 등으로 정부의 시장 직접 개입이 감소함에 따라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자조금 도입
 - 경쟁력 제고를 통해 고려인삼의 확고한 종주국 지위 구축
 - 국내외 고려인삼 소비 확대 등을 통한 산업 성장기반 조성
 - 제조가공, 유통, 수출 분야 종사자의 소득 증대 도모
 - 고품질 안전 인삼 생산기반 조성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

1.2. 거출 방식

- 인삼의무자조금 거출은 7,222개의 생산 농가와 5개의 생산자 단체, 30개의 자체 검사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향후 거출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임.
- 의무자조금 거출비율은 효율적인 자조금의 운영을 위한 규모조성과 거출 대상자 간 이해관계 해소를 위해 총회에서 결정하였으며, 인삼의무자조금의 경우 거출대상별(생산농가, 생산자 단체, 자체검사업체) 거출비율이 상이함.

표 3-17. 주요 인삼자조금 거출 대상 및 규모

거출 방식	거출 규모 및 대상		도입('15 조성액)
직접 납부	농가	1,800원/a(2년근)	'15(15억 원)
	농협 (생산자 단체)	120원/a(2년근)	
	자체검사업체	홍삼 900원/kg, 백삼 300원/kg, 태극삼 500원/kg, 기타홍삼 500원/kg	

주: 농협은 자체검사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기동부, 안성, 강원, 서산, 전남 인삼 농협임.

자료: 한국인삼협회.

- 인삼농가와 생산자단체⁴에서의 자조금 거출경로는 <그림 3-1>과 같음.
- 1단계: 농가는 수납위탁기관⁵에 인삼 경작에 대해 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은 수탁기관은 신고 내용에 따라 식재를 확인함
 - 2단계: 수납위탁기관은 확인한 식재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받은 식재정보를 한국인삼협회(자조금관리위원회)에 통보함
 - 3단계: 수납위탁기관은 식재정보를 바탕으로 농가에 납부안내서를 발송하고 농가는 납부안내서에 따라 자조금을 납부함
 - 4단계: 수납위탁기관은 농가로부터 납부받은 자조금을 자조금관리위원회로 송금한 뒤, 자조금관리위원회로부터 수수료를 송금받음

그림 3-1. 생산농가 및 생산자 단체에서의 의무자조금 거출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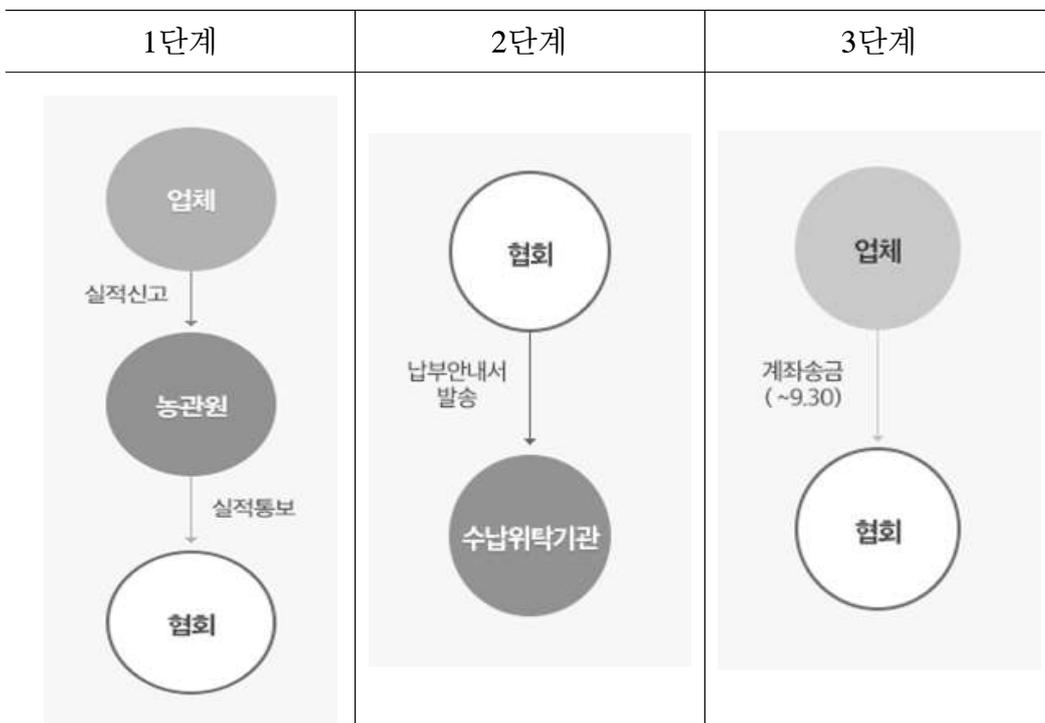


주: 협회는 한국인삼협회, 수탁기관은 수납위탁기관임.
 자료: 한국인삼협회.

4 자체검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농협 등 생산자단체.
 5 전국 12개 인삼농협 등 생산자단체.

- 자체검사업체에서의 자조금 거출경로는 <그림 3-2>과 같음.
- 1단계: 자체검사업체는 「인삼산업법 제17조 3조 5항」에 따라 실적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해당 실적을 한국인삼협회(자조금관리위원회)에 통보함
 - 2단계: 자조금관리위원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통보받은 실적을 바탕으로 수납위탁기관⁶ 및 자체검사업체에 납부안내서를 발송함
 - 3단계: 납부안내서를 받은 자체검사업체 및 수납위탁기관은 자조금관리위원회에 자조금을 납부함

그림 3-2. 자체검사업체에서의 의무자조금 거출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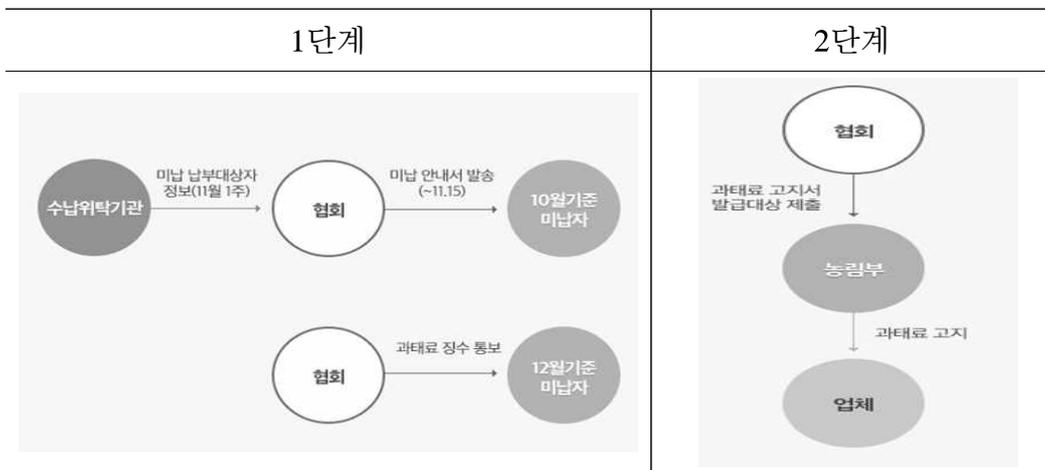
주: 농관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협회는 한국인삼협회, 업체는 자체검사업체, 수탁기관은 수납위탁기관임.
 자료: 한국인삼협회.

⁶ 자체검사업체를 보유한 농협 등 생산자단체.

○ 미납자조금 거출경로는 <그림 3-3>과 같음.

- 1단계: 수탁기관은 미납자 정보를 한국인삼협회(자조금관리위원회)에 발송하고 자조금관리위원회는 10월 기준 미납자에 대해 미납안내서를 발송하며 12월 기준 미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징수를 통보함
- 2단계: 자조금관리위원회는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를 위해 과태료 고지서 발급대상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과태료 발급대상자에게 과태료를 고지함

그림 3-3. 미납자조금 거출경로



주: 협회는 한국인삼협회, 업체는 자체검사업체, 수탁기관은 수납위탁기관임.
 자료: 한국인삼협회.

○ 거출금에 대한 징수수료는 법률상 최대 거출금의 7%까지 적용할 수 있으나,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인삼의무자조금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총회에서 3.5%로 결정함.

표 3-18. 인삼자조금 연체금 및 징수수료

연체금	징수수료
농림부에서 미납자에게 고지	거출금의 3.5% 지급

자료: 한국인삼협회.

1.3. 거출 현황

- 생산농가에서의 거출실적은 거출계획의 121%를 달성하였고, 생산자단체에서의 거출실적은 거출계획의 196%를 달성함.
 - 높은 거출실적은 의무자조금에 대한 생산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에 기인함.
- 자체검사업체에서의 거출실적은 거출계획의 96%로 농가 및 생산자단체와 차이가 있어 무임승차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인삼의무자조금에 대한 참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향후 거출실적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3-19. 2015년 인삼자조금 거출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분	실적	실적 비율
임의자조금	9 (100)	0.6
생산농가	490 (121)	31.8
생산자단체	14 (196.4)	0.9
자체검사업체	271 (96.5)	17.6
정부보조금	529 (100)	34.3
임의자조금 이월	229 (100)	14.8
합계	1,543 (105.6)	100.0

주: ()는 계획 대비 비율(%).임.

자료: 한국인삼협회.

1.4. 거출금 사용실적 및 2016년 거출계획

- 도입된 지 1년 밖에 되지 않은 인삼의무자조금의 사용실적은 소비홍보에 대한 지출이 7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운영관리비 17%, 교육 및 정보제공 2%, 선거 2%, 징수수료 2% 순임. 의무자조금제도가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자조금의 가장 본원적 활동인 소비촉진 및 홍보활동에 지출이 집중되어 있음.

표 3-20. 2015년 인삼자조금 사용실적

단위 : 백만 원, %

구분	실적	실적 비율
소비홍보	688 (84.2)	76.5
교육 및 정보제공	21 (43.6)	2.3
선거	17 (100.3)	1.9
징수수료	16 (100.3)	1.8
운영관리	158 (90.9)	17.6
합계	899 (61.6)	100.0

주: ()는 계획 대비 비율(%)임.

자료: 한국인삼협회.

- 인삼의무자조금은 자조금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용을 위해, 2016년에는 의무자조금 조성규모를 전년 대비 57.7% 증가한 약 24억까지 증가시킬 계획임.

표 3-21. 2016년 인삼자조금 조성계획

단위 : 백만 원, %

구분	15년 실적	16년 계획	'16년/'15년 증감율
이월액	229	389	69.9
회원거출금	784	828	5.6
정부보조금	529	1216	129.9
합계	1543	2433	57.7

자료: 한국인삼협회.

6. 해외 쌀 자조금 사례

1.1. 미국 아칸소(Arkansas)주 쌀 자조금⁷

- 1950년대 후반 아칸소주 쌀생산자 단체인 쌀협회(Rice Council)가 창립되면서 아칸소주 쌀생산자는 쌀 판매로부터 얻은 수익의 일부를 국내외 쌀 판매 촉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하기 시작하였으며,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농가들이 연구를 목적으로 한 기금을 자발적으로 모금하기 시작함.
- 이후 1985년 주법 제725호에 따라 아칸소주 쌀 연구 및 판매촉진위원회 (Arkansas Rice Research and Promotion Board, ARRPB)가 설립되고 쌀 판매촉진과 연구를 위한 기금이 동 기관에 의해 통합·운용되기 시작하면서 알칸소주 쌀 자조금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행됨.
- ARRPB 위원은 쌀산업 단체의 추천을 받아 주지사로부터 임명받은 9명의 쌀생산자로 구성됨. ARRPB 위원은 위원회 모임에서 투표를 통해 제안된 연구나 판매촉진 활동에 대한 자조금 사용 승인 결정을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무보수임.

⁷ 아칸소주 쌀자조금 위원회(Arkansas Rice Research and Promotion Board) 홈페이지 (www.arkrice.org)를 참고하여 작성함.

- 1985년 주법 제725호는 자조금 징수액을 1985년에는 부셸(bushel)당 2센트, 1987년부터는 3센트로 정하여, 1.65센트는 연구·개발, 1.35센트는 판매촉진과 시장개발활동에 사용하도록 함.
 - 농가 조성금은 쌀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주로 사용되며, 최초 구매자로부터 조성된 자조금은 아칸소주 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쌀의 판매촉진 및 시장개발활동에 사용하도록 함(박종수 외, 2006).
- ARRPB는 1985년 이후 지속적으로 쌀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으며, 연구프로그램은 주로 아칸소대학(University of Arkansas)에서 담당하고 있음.
 - 주 연구 분야는 대부분이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신 품종개발에 집중되고 있으며, 그 결과 1984년부터 2009년까지 아칸소 대학에서 개발한 품종들이 아칸소 쌀 재배면적의 42~86%에 이용되고 있음.
-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금액은 연평균 6백만 불 이상에 달하며, 소비촉진자금의 대부분은 미국쌀연합회(USA Rice Federation)로 송금되어 전문가 집단에 의해 국내외 소비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있음(박종수 외, 2006).

2.1. 호주의 쌀부과금⁸

- 호주의 쌀부과금(Rice Levy) 제도는 호주 쌀 산업의 수익성과 지속가능성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 중임.
- 쌀부과금은 주로 호주의 자조금 운영단체인 농촌 산업 연구 및 개발공사

⁸ Ricegrowers' Association of Australia Inc(2014), 박종수 외(2006), 최병욱 외(2012)를 바탕으로 요약 및 수정·보완함.

(Rural Industries Research and Development Corporation, RIRDC)에서 수행하는 종자개발 및 정밀농업과 지속성 관련 연구, 투입재 및 작물보호를 위한 연구 등 쌀 관련 식재단계 이전부터 가공단계까지의 연구개발 등의 활동에 사용되며, 일부는 식물건강연구소(Plant Health Australia, PHA)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 등의 활동에 사용됨.

- 호주에서 판매촉진 및 상업적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활동이나 연구는 주로 SunRice와 같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쌀부과금 거출 대상은 생산자이고 부담금액은 톤당 3달러로 가공업자가 위탁수납하여 호주 농산물 자조금을 총괄하는 농어임업성의 자조금국(Levy Revenue Service)에 납부하고 자조금국은 징수금을 RIRDC와 PHA에 분할 송급하며, 추가적으로 정부의 대응자금도 분할 지급함.
- 생산자 부담금인 톤당 3달러 중 6센트는 PHA에 지급되며, 나머지는 RIRDC에 지급됨.
 - 연방정부의 보조금은 산업 연간 총생산액(Gross Value of Production, GVP)의 3개년 이동평균의 0.5%까지 지급이 가능함.
- 호주 쌀부과금은 소비촉진이 주 목적인 우리나라 자조금과는 다르게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나, 쌀부과금의 투자결정은 쌀생산자, 가공업자, 기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RIRDC 내의 쌀 연구개발 위원회(RIRDC Rice R&D Committee)에서 결정되고 위원회의 과반 정도가 쌀생산자로 구성되어 주로 쌀생산자가 원하는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해 사용됨.
- 호주의 쌀생산자 단체인 호주쌀생산자협회(Ricegrowers' Association of Australia Inc.)는 2014년 호주 상원 농촌지역위원회(Senate Rural and Regional Affairs Committee)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쌀부과금을 통한 기술개발 및 정보제공이 농가의 생산효율성 및 쌀의 품질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고함(Ricegrowers' Association of Australia Inc. 2014).

제 4 장

쌀 의무자조금 도입방안

1. 의무자조금 도입 절차

- 현행 법률상 농수산물 분야에서 의무자조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근거하여 자조금단체를 설립하고 의무자조금을 설치해야 함.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은 부록 1에 제시됨.
- 자조금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농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하며(법 제2조 제4호), 자조금단체는 임의자조금단체와 의무자조금단체로 구분됨.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음.
- 2016년 현재 자조금단체가 의무자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의무자조금의 설치를 승인하고, 농산업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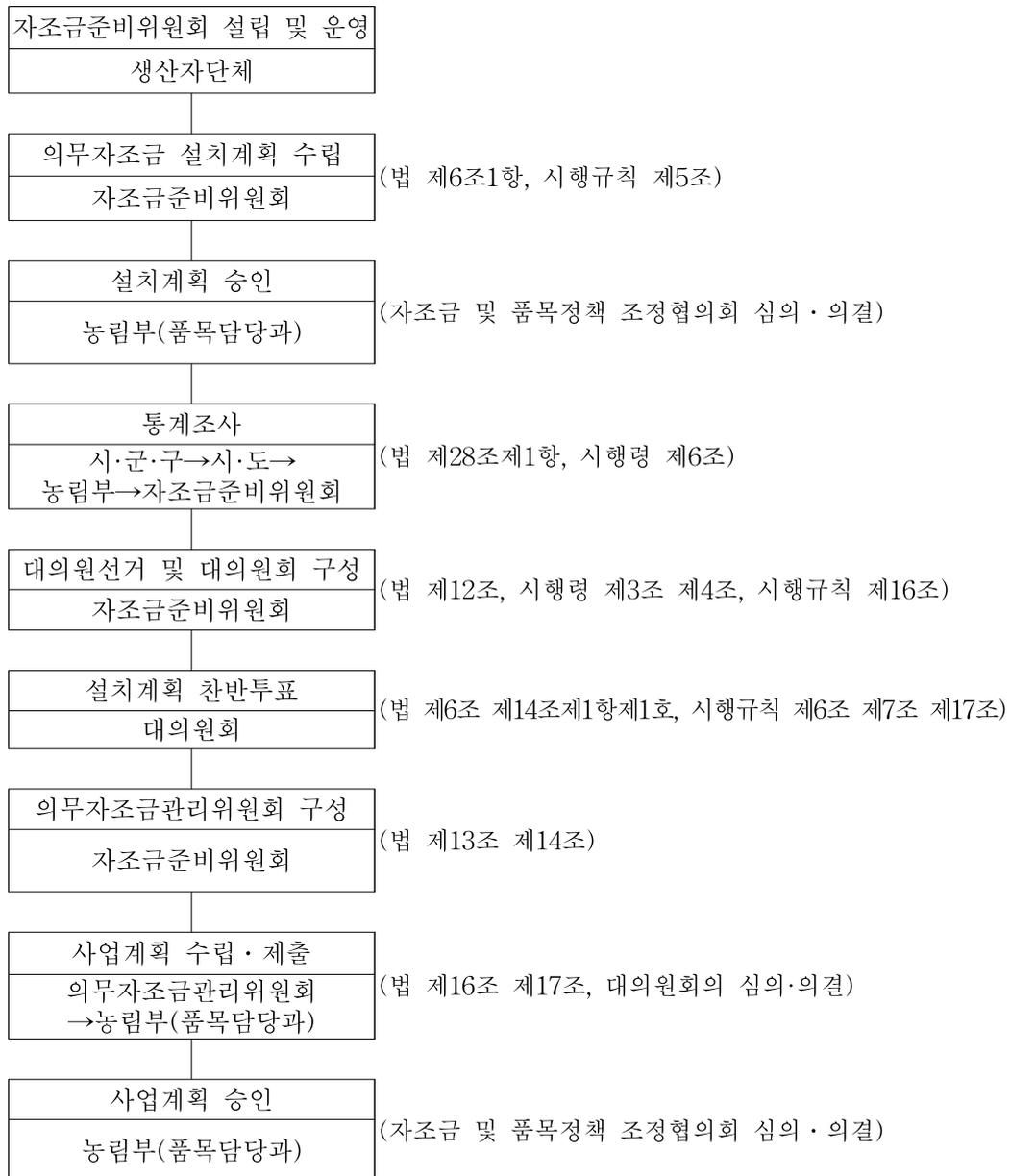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이 의무자조금 설치에 찬성해야 함 (2016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 2015년 의무자조금 설치 승인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단체로서 자조금사업을 신청한 전년을 기준으로 전국 대비 자조금을 납부하는 단체 구성원의 생산량(액) 또는 출하량(액) 등의 비율이 50% 이상이었으나 2016년에는 생산량(액) 또는 출하량(액)에 대한 의무기준이 명시되지 않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승인할 때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의 대표성과 사업역량, 의무거출금 납부방법 및 산정기준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야 함.
- 또한, 의무자조금의 폐지와 관련된 법 제21조 6항에 따르면 의무자조금단체 농수산업자의 해당 농수산물 생산량 또는 생산액이 전국 생산량 또는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정부의 출연 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무자조금 설치를 희망하는 자조금단체는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대표성을 보유할 필요가 있음.
- 쌀의 경우 현재 정부의 설치 승인을 받은 자조금단체 및 대의원회 등이 구성되지 않았으므로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해서는 먼저, 농협이나 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 의무자조금 도입에 적극적인 비영리법인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자조금준비위원회를 설립하여 의무자조금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해야 함.
- 자조금 설치계획이 승인되면 자조금준비위원회는 대의원회 설립 및 대의원 선거 준비를 위한 대의원회 설립계획서, 선출구역, 선거인, 선거 일시 및 장소, 대의원 후보자의 등록 장소, 선거인 명부 등을 준비하고, 필요하면 다음

의 통계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에 제공함.

- 쌀 생산자 수
 - 평균 거래가격(도매가격 기준, 도매가격 통계 부재 시 소매가격 기준)
 - 재배면적과 생산량 및 생산액(통계 부재 시 출하량과 출하액)
 - 수출량 및 수출액
 - 수입량 및 수입액
- 대의원 선거를 통해 대의원이 선출되면 자조금준비위원회는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의무자조금 설치에 대한 찬반투표 시행하고, 의무자조금 설치가 승인되면 법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함.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사업계획과 운용계획 등을 수립하여 대의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조금 및 품목정책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의무거출금을 조성하여 소비촉진 사업 등 자조금사업을 시행함.

그림 4-1. 의무자조금 도입 절차도



2. 자조금준비위원회 설립 및 의무자조금사업 준비

2.1. 자조금준비위원회 설립

- 자조금준비위원회는 의무자조금제도 도입이 결정되어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자조금 도입을 위해 필요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함.
 - 자조금 교육 및 홍보 등 정보제공 활동
 -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 준비
 - 대의원회 설립계획서 준비
 - 대의원 선거 및 대의원회 구성
 - 의무자조금 설치계획 찬반투표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

- 축산부문의 경우 축종별 협회(낙농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 한우협회)를 중심으로 의무자조금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당시 협회 구성원 수 등이 전체 산업의 과반에 미달하여 자조금 단체로서의 대표성 확보가 어려웠음.

- 이에 따라 각 축종별 협회는 농협중앙회와 공동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중앙회와 축종별 협회가 공동으로 농림부에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의무자조금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와 더불어 의무자조금제도의 도입을 위한 제반 사항을 마련함.

- 다만, 두 개 이상의 단체가 공동으로 자조금사업을 발의하고 추진할 경우 모든 추진 과정(준비위원회, 대의원회, 관리위원회 구성 등)에서 각 단체의 이기주의에서 비롯되는 의견 충돌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원활한 의무자조금제도 도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음.

- 따라서 쌀의 경우 의무자조금제도를 희망하는 단체의 구성원 수 또는 생산량(생산액) 등이 전체 산업 종사자 또는 생산량(생산액)의 과반 이상으로 충분한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단일 단체를 중심으로 자조금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추진과정 및 자조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함. 다만, 충분한 대표성 확보가 어려울 때는 축산부문의 예와 같이 복수의 단체가 공동으로 자조금준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자조금준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은 법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의무자조금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단일 또는 복수의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쌀 산업 특성과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 규정(법 제14조 1항) 및 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 구성 규정(시행규칙 제4조)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함.
 - 위원회는 12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은 생산자단체가 추천한 쌀 재배농가 및 농민단체 대표(위원의 과반수), 공무원(1명), RPC 대표(농협 1명, 민간 1명), 도정업자 대표(1명), 학계(1명), 비영리민간 소비자보호 단체 대표(1명), 기타 생산자단체가 추천하는 가공 및 유통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함.

2.2. 의무자조금사업 준비

- (자조금 교육 및 홍보 등 정보제공 활동) 자조금준비위원회는 쌀 산업 관련자 특히, 쌀 재배농가들을 대상으로 자조금 교육 및 홍보 등 정보제공을 통해 의무자조금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
-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 준비) 법 제6조1항에 따라 자조금단체가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의무자조금 설치 이유, 재원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따라서 자조금준비위원회는 시행규칙 제5조에 명시된 다음의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 내용을 참고하여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의무농수산물자조금(이하 "의무자조금"이라 한다)의 명칭
- 의무자조금의 설치 이유와 목적
- 의무거출금의 부과 대상 및 납부방법
-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 의무거출금의 납부면제에 관한 계획
- 의무자조금의 재원확보 방안 및 운영계획

○ (대의원회 설립계획서 준비) 자조금단체가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법 제6조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승인을 받은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함. 따라서 자조금관리위원회는 대의원을 선출하고 대의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대의원회 설립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대의원회 설립계획서에는 대의원 선거일,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수, 대의원 수, 대의원회 운용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대의원 선거일 30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쌀 생산자 수, 평균 거래가격(도매가격 기준, 도매가격 통계 부재 시 소매가격 기준), 재배면적과 생산량 및 생산액(통계 부재 시 출하량과 출하액), 수출량 및 수출액, 수입량 및 수입액 등의 통계자료는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자조금준비위원회에 제공함.

○ (대의원 선거 및 대의원회 구성) 시행령 제4조1항에 따라 자조금준비위원회는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대의원을 선출해야 하며, 시행령 제4조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 또는 ‘시·군·자치구별’을 기준으로 선출구역을 확정하여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대의원회

를 구성해야 함. 이때 선출구별 대의원 수는 시행령 제4조 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함.

- 선출구별 대의원 수 = $\{[\text{선출구역 내의 해당 농수산물 농수산업자 수} / \text{해당 농수산물 농수산업자 수 전체}] \times \text{해당 농수산물 대의원 총수} \times 0.5\} + \{[\text{선출구역 내의 해당 농수산물 생산량}(\text{생산량 통계가 없을 경우 출하량}) / \text{해당 농수산물 생산량 전체}(\text{생산량 통계가 없을 경우 출하량})] \times \text{해당 농수산물 대의원 총수} \times 0.5\}$
 - 생산량이나 출하량에 대한 통계 부재 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생산량 대신 농림축산식품부 직불금 지급자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자료에 명시된 재배면적을 생산량 대신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함(기후 및 병충해 등을 외생변수로 가정하면, 재배면적은 생산량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음).
- 생산농가 수가 많은 쌀 산업의 특성상 대의원 선거는 한우자조금의 경우를 참고로 하여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임.
- 생산농가 수가 한돈이나 낙농에 비해 월등히 많은 한우의 경우 자조금 도입을 위한 대의원 선거를 2004년 8월 25일(영남권)부터 11월 11일(충청권)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함(박종수 외, 2006).
- (의무자조금 설치계획 찬반투표) 대의원이 선출되고 대의원회가 구성되면 자조금준비위원회는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의무자조금 도입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법 제6조 2항에 따라 투표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자조금 도입을 공표함.
- 의무자조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함.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 의무자조금 도입이 승인되면 자조금준비위원회는 법 제14조에 따라 대의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산함. 위원의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위원의 과반수는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사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 의무자조금 수납기관의 대표나 그가 지명하는 사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소비자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의 대표나 그가 지명하는 사람
 - 의무자조금단체가 추천하는 학계 및 생산·가공·유통·수출·홍보마케팅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관련 업계가 추천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 위원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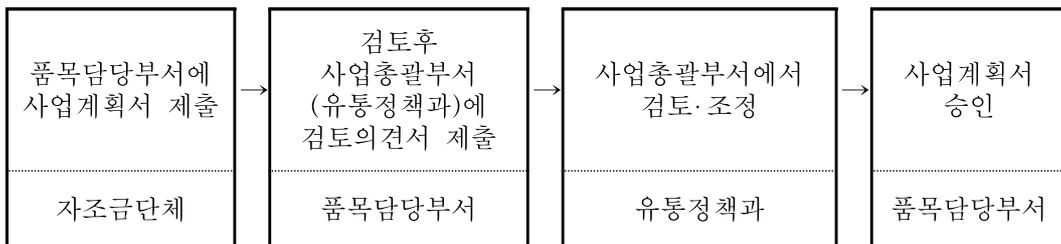
3.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출범 및 의무자조금사업 시행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법 제18조에 따라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보조하는 의무자조금사무국을 산하에 설립하고 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지침을 법과 「농산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용요령(고시)」에 근거하여 수립한 후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수행함.
- 의무거출금 거출시점 및 납부일자의 결정
 - 의무거출금의 수납

- 의무자조금 사업계획과 운용계획의 수립·변경과 결산 및 그 내용의 총회 보고
 - 의무자조금의 운용, 관리 및 집행
 - 의무자조금 대납기관의 지정
 - 의무거출금의 수납위탁 관련 수수료 결정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개정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의 제정·개정 및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대의원회에서 위임하는 업무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설립 첫해에 의무자조금사업의 시행을 위해 다음 회계연도의 자조금사업 추진계획서를 준비하여 직전 회계연도 12월 31일까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해야 함.
- 자조금사업 추진계획서에는 자조금의 명칭, 자조금의 목적 및 내용, 거출금의 납부대상자, 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거출금의 납부면제기준, 자조금의 재원확보 방안 및 사업계획(수입 및 지출계획), 자조금의 운영 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계획서 이외에 다음의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해야 함(2016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 최근년도 기준으로 쌀의 전국적인 생산규모(생산량·생산액·출하량·출하액 중 1개 항목)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쌀 의무자조금 관리규정 등
 - 최근 1년간의 자체 자조금 조성 및 운영실적(증빙서류 첨부)
 - 이중 최근 1년간의 자체 자조금 조성 및 운영실적은 쌀과 같이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신규 자조금단체에만 요구됨.

-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자조금관리위원회는 자조금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쌀 의무자조금제도 도입은 완료됨.

그림 4-2. 사업계획 승인 단계



자료: 2016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4. 거출 대상

4.1. 거출 대상

- 쌀 의무자조금 도입 초기 단계에서 자조금 거출 대상을 생산 농가 외에 가공업자, 유통업자, 수입업자 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지정할 경우 거출금 부담 경감 및 형평성 확보 등의 장점은 있으나, 다수의 소규모 산업 종사자가 존재하는 쌀 산업의 특성상 초기 공감대 형성이 어렵고 의무자조금 도입 과정에서 다수의 개인 간, 단체 간 이견으로 자조금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움.
- 따라서 의무자조금 도입 초기에는 자조금 도입에 적극적인 생산자를 중심으로 거출 대상을 정하고, RPC와 도정업체 등 기타 쌀 산업 종사자들은 자발적 참여 의지가 있는 대상에 한하여 지원금 형태로 자조금을 거출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거출 대상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 생산자만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것은 생산자 중심인 자조금 본연의 취지에는 적합하나, 1차 가공업자(RPC 및 도정업체)도 자조금사업으로 쌀 소비 감소폭이 줄어들거나 쌀 소비량이 증가할 경우 판매 측면에서 그에 따른 혜택을 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의 2014년 변동직불금 지급자료에 의하면 2014년 우리나라 벼 재배농가는 총 65만 농가로 상당수는 소규모 영세농가임. 동 자료에 따르면 전체 농가 중 0.5ha 미만 농가 비중은 43.7%에 달하며 이들 농가의 평균 소득은 통계청 농산물생산비 조사자료를 기준으로 215만 원으로 전체 농가 평균 소득의 22.8%에 불과함. 따라서 모든 농가를 의무자조금 거출대상으로 지정할 경우 다수의 소규모 영세농가들의 반발로 의무자조금사업 도입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표 4-1. 재배규모별 농가수, 재배면적 및 소득

단위: 원

구분	농가		면적		소득	조수익
	호	농가비율	ha	누적비율		
10.0ha이상	4,560	0.7%	66,147	9.1%	82,624,234	49,661,237
5.0~10.0ha	16,078	2.5%	108,910	24.0%	44,242,245	28,851,788
3.0~5.0ha	26,721	4.1%	101,829	38.0%	24,131,686	14,005,348
2.5~3.0ha	14,299	2.2%	39,072	43.3%	15,628,946	9,037,086
2.0~2.5ha	22,698	3.5%	50,610	50.3%	13,119,121	7,421,672
1.0~2.0ha	115,705	17.7%	160,914	72.3%	8,845,384	4,534,969
0.5~1.0ha	167,658	25.7%	119,741	88.8%	4,439,586	2,131,116
0.5ha미만	285,399	43.7%	81,911	100%	2,148,329	870,833
합계	653,118	100%	729,133		(9,411,396)	(5,149,387)

주: 소득과 조수익의 합계는 평균임.
 자료: 농가 및 면적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 2014년 변동직불금 지급자료이고, 소득 및 조수익 자료는 통계청 농산물생산비통계 자료(2014)임.

- 또한, 소규모 영세농가들은 판매물량이 적어 자조금사업으로부터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원활한 자조금사업 도입을 위해서는 먼저,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를 대상으로 의무자조금을 거출하는 것이 현실적임.
 - 쌀 재배농가의 규모화·전업화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거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가의 비율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판단됨.
- 전체 농가 중 2.0ha 이상 농가 비중은 13.0%에 불과하나 이들 농가의 재배면적은 전체 재배면적의 50.3%로 절반에 해당(대표성 확보)하고 소득도 평균소득의 1.4~8.8배에 달함. 따라서 의무자조금 도입 시 거출대상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직불금 지급자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자료를 기준으로 2.0ha 이상의 농가로 한정하고 전체 농가와의 형평성 도모를 위해 해당 농가의 재배면적 중 2.0ha까지는 거출대상에서 제외하고 초과하는 재배면적에 대해서만 의무자조금을 거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거출금 = 거출대상면적(ha) × 면적당 평균 생산량 × 평균산지가격 × 거출율.

4.2. 법률 검토

- 거출금 납부면제 기준은 법 제11조 10호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결정하며, 법 제19조1항에 따라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납부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영세 농수산업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음. 따라서 2ha 이상 재배농가를 거출 대상으로 2ha 초과 면적에 대해 자조금을 거출하는 것은 대의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의 합의를 바탕으로 시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5. 거출 방식 및 법률적 검토

5.1. 거출 방식

- 국내외 거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주요 유통경로 상에 위치한 단체가 위탁 거출하는 방식과 거출대상이 직접 납부하는 방식임. 위탁 거출 방식은 주로 유통구조가 단순한 산업에서 유용하며, 직접 거출 방식은 유통구조가 상대적으로 복잡한 산업에서 유용함.
- 우리나라 축산업은 유통과정에서 도축장 또는 유업체 등의 집유주체(낙농의 경우) 경유가 필수적이므로 도축장과 집유주체를 통해 위탁 거출함. 미국의 플로리다 시트러스자조금도 생산자가 과일포장업체 또는 주스제조업체에 생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단순한 유통구조이기 때문에 과일포장업체 및 주스 제조업자가 위탁 거출함. 반면, 유통구조가 복잡하거나 유통단계에서 물량이 집중되지 않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생산물 판매 시 판매대금의 일부를 자조금단체에 지급한다는 동의서에 서명하고 거출액을 제외한 판매대금을 수취하는 방식 등을 이용함.
- 우리나라 쌀 자조금에 적용할 수 있는 거출 방식으로는 일반적인 거출 방식인 농가 직접 납부와 1차 가공업자(RPC 및 도정업체) 위탁 거출 방식, 그리고 쌀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정직불금에서의 공제 거출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각 거출 방식별 장단점을 살펴보면, 고정직불금 공제거출이 거출 및 관리에서 가장 편리하고 모든 쌀 재배농가가 직불금 수령 대상임을 고려할 때 거출 대상의 예외없는 거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하지만 직불금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므로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금의 강제적 거출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고정직불금 공제거출 방식은 헌법에 위배될 수 있음.
- 1차 가공업자(RPC 및 도정업체) 위탁 거출의 경우 납입관리는 용이하나 정확한 거래물량 파악이 어렵고, 위탁 징수에 따른 수수료 미제공 시에는 거출에 대한 유인이 부족하다는 단점을 가짐. 또한, 도정업체는 대다수가 소규모 업체로 수가 많고 유통물량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정업체를 통한 위탁거출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현실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위탁 대상은 RPC 정도이나 현재 RPC를 통한 유통물량은 약 60% 정도에 불과해 거출 목표의 일부만이 거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RPC에서만 거출 시 농가들이 수익보전을 위해 소규모 도정업체로 거래처를 변경할 유인을 제공하여 실제 거출율은 더욱 낮아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함.
- 농가 직접 납부는 농가 동의에 의해 자동 납부 형식으로 자조금을 거출하면 납입관리가 용이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나, 거출 대상 농가 전체의 동의를 얻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비용이 지출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짐.

- 농가 직접 납부 방식을 도입할 경우에는 행정비용 최소화를 위해 자조금관리위원회와 직불금 지급을 전담하고 있는 농협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 즉, 자조금관리위원회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농협조직과 협력하여 직불금 대상 농가로부터 의무자조금 납부에 대한 자동이체 동의서를 받고, 직불금이 지급되는 농협계좌에서 고정직불금 지급 당일 또는 차일에 거출금을 자동으로 자조금관리위원회로 송금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이 경우, 농협이 일종의 수납기관의 역할을 하고 이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자조금관리위원회는 법 제20조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의무거출금의 100분의 7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의무거출금 수납에 따른 징수수수료를 농협에 제공할 수 있음.
-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따라 RPC 유통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는 RPC 위탁 거출의 효율성 및 편의성이 높으나, 현재로써는 농가 직접 납부가 행정비용은 상대적으로 높더라도 자조금의 본래 취지에 가장 적합하고 관련 법 위반 가능성 및 자조금 미납 유인에 따른 유통구조 왜곡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의무자조금 도입 시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판단됨.
- 현행 법률상 의무거출금의 한도는 법 제8조에 따라 평균거래가격의 1,000분에 10 이내에서 결정해야 함. 다만,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는 대의원회 의결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통해 변경 가능함.
- 앞서 고려한 의무자조금 거출대상인 재배면적 2ha 이상 농가의 2ha 초과 면적에 대해 법 한도 내에서 자조금을 거출할 경우, 거출률(0.1%~1.0%)에 따라 최소 22억 원에서 최대 220억 원의 농가거출금 확보가 가능함.

표 4-2. 2ha 이상 재배농가에서 거출시 공제 후 재배규모별 거출액

단위: 천 ha, 억 원

구 분	2.0~2.5ha	2.5~3.0ha	3.0~5.0ha	5.0~10ha	10ha이상	합 계	
농가수(천 호)	23 (26.9%)	14 (17.0%)	27 (31.7%)	16 (19.1%)	5 (5.4%)	84	
면적(천 ha)	51 (13.8%)	39 (10.7%)	102 (27.8%)	109 (29.7%)	66 (18.0%)	367	
거출대상면적 (공제후 면적)	5 (2.6%)	10 (5.3%)	48 (24.5%)	77 (38.8%)	57 (28.8%)	198	
평균 생산량 (가마/ha)	63	63	63	63	63	63	
산지단가 (원/가마)	166,198	166,198	166,198	166,198	166,198	166,198	
자조금거출액							
거 출 율 (%)	1	5	11	51	80	60	207
	0.5	3	5	25	40	30	104
	0.4	2	4	20	32	24	83
	0.3	2	3	15	24	18	62
	0.2	1	2	10	16	12	41
	0.1	1	1	5	8	6	21

주: 거출대상면적은 형평성을 위해 농가당 2ha를 공제한 면적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4년 변동직불금 지급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5년 보도자료.

- 다만, 재배면적 2ha 이상 농가가 보유한 재배면적은 전체 재배면적의 50.3%에 해당하나, 직접적인 거출 대상 면적은 전체 재배면적의 27.2%에 불과하여, 일부에서는 2ha 이상 농가 주도로 구성된 단체가 의무자조금 단체로 지정될 경우 자조금 단체의 대표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음.

- 하지만 의무자조금 설치 단계 또는 폐지 시 고려되는 자조금 단체의 대표성은 해당 단체 구성원의 생산량 또는 생산액이 전국 생산량 또는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하므로 쌀 재배면적이 생산량(재배면적 × 단수)을 대표한다고 가정한다면 2ha 이상 농가가 보유한 재배면적 비중이 대표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지, 거출 대상 면적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님.
- 또한, 의무거출금의 금액 및 한도, 납부면제의 기준 등은 법 제11조에 따라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이므로 대의원회에서 위와 같은 거출방식을 결의할 경우 거출방식 상의 문제도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ha 이상 농가의 2ha 초과 면적에 대한 거출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경우에는 대안으로 2ha 이상 농가의 전체 재배면적에 대해 자조금을 거출하되, 총 자조금 농가 조성액은 2ha 초과 면적에 대해서만 거출할 때와 전체 재배면적에 대해 거출할 때가 동일하도록 거출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 예를 들어, <표 4-2>에서 2ha 이상 농가의 2ha 초과 면적에 대해 0.5% 거출율을 적용하면 총 104억 원의 자조금이 조성되며, 이는 2ha 이상 농가의 전체 재배면적에 대해 0.27%의 거출율을 적용할 시 동일하게 조성되는 금액임.
- 하지만 2ha 미만 농가는 자조금 납부면제 대상으로 하고 납부대상인 2ha 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소유 면적 전체에 대해 자조금을 거출한다면 형평성 측면에서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따라서 자조금 도입 초기의 거출방식은 2ha 이상 농가의 2ha 초과 면적에 대한 거출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함.

- 소비촉진활동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자조금사업의 특성상 사후적 경제성 평가는 가능하나,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수립 이전의 경제성 평가는 불가능하므로 자조금사업이 도입되지 않은 시점에서 적정 조성액을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함. 대신 현재 자조금사업을 실시하는 품목 중 생산액이 비슷한 품목의 농가거출금을 고려하여 목표 거출액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통계에 의하면 2014년 농업부문 생산액은 쌀이 8,154십 억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돼지 6,615십 억원, 한우 4,026십 억원 순임(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통계). 따라서 한돈과 한우자조금의 2014년 농가거출금인 123억 원(한돈)과 186억 원(한우)을 참고하여 최소 100억 원 이상의 농가거출금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법이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의무거출금의 금액 및 한도의 결정은 대의원회 의결사항임.

5.2. 법률 검토

- 고정직불금 공제 거출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로 해석될 경우 헌법 23조 재산권 위배 가능성이 존재함. 따라서 자조금에 반대하는 농가 또는 단체가 자조금 징수금지 또는 사업중지 가처분 신청 등을 법원에 제출하면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소송 기간 동안 자조금사업은 법에 의한 제재를 받게되어 자조금사업은 추진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큼.
- 의무거출금의 한도는 법 제8조1항에 따라 평균거래가격의 1,000분에 10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따라서 앞서 고려한 의무자조금 거출률(0.1%~1.0%)에 따라 최소 22억 원에서 최대 220억 원의 농가거출금을 조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음.

- 또한, 법 제8조1항은 해당 농수산물의 특성상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 한도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 한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따라서 필요시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음.

6. 정부 출연금 및 법률적 검토

6.1. 정부 출연금

- 자조금단체의 자체 자조금 조성액 외에 정부로부터 국고보조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받을 수 있으나, 지원액은 사업 신청액, 집행실적, 운영실적 평가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짐.
 - 단, 당해연도(전년도 이월액 제외) 자조금 자체 조성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됨.
- 쌀 의무자조금에 대한 정부 지원금의 출처로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근거로 조성되는 기금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고려할 수 있음.

-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동 법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자조금 출연 및 지원)에 따른 사업 지원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조금 지원금으로 활용이 가능함.
 - 정부는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 자조금 지원에 80억 원의 예산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배정함⁹.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이외에는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양곡관리특별회계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해 규정한 동 법 제7조제2항에 의하면 양곡관리특별회계는 양곡관리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전출금,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그 밖에 양곡관리사업과 관련된 지출에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현행 법률상에서 쌀 의무자조금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활용하여 조성하는 것이 법률 개정 없이 정부가 대응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며, 양곡관리특별회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양곡관리사업에 자조금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⁹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www.at.or.kr/contents/apko332190/view.action).

6.2. 법률적 검토

- 국내법에 대한 검토는 앞서 이루어졌으나, 우리나라는 WTO 회원국으로 WTO 등에서 규정한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 현재 WTO는 국내보조에 사용되는 보조금을 크게 무역왜곡보조총액(Overall Trade Distorting Support: OTDS)과 허용보조(Green Box)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중 무역왜곡보조총액은 감축대상보조(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MS),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생산제한계획하의 직접지불(Blue Box)의 합계로 산출함.
- 허용보조는 보조금에 대한 감축 의무가 없으나, 허용보조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무역왜곡 효과나 생산에 미치는 효과가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해야 함. 일반적으로 허용보조에 속하는 보조는 정부서비스와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로 쌀 고정직불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생산량이나 시장가격과의 연계가 없으므로 허용보조에 속함.
- 감축대상보조에는 시장가격지지를 위한 보조금, 가격 또는 생산량과 연계된 보조금, 생산-가공-유통 등에 수반되는 비용 절감을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 등이 포함됨. 예를 들어, 쌀 직불제 중 변동직불제는 목표가격과 연계되고, 생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감축대상보조에 해당함.
- 최소허용보조는 감축대상보조의 성격을 지니지만, 규모가 작아 감축의무가 면제되는 보조이며, 생산제한계획하의 직접지불은 생산제한을 전제로 감축의무가 면제되는 보조임.
 - 최소허용보조는 품목특정 보조의 경우 당해 품목 총생산액의 5%(개도국 10%) 이하, 품목불특정 보조의 경우 농업총생산액의 5%(개도국 10%) 이하로 허용되며, 현재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를 보장받고 있으나, 앞으로 DDA가 타결되는 시점에서는 선진국 지위를 부여받을 가능성도 존재함.

- 현재 우리나라는 자조금 정부 대응자금을 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조로 구분하여 통보하고 있으며, 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조의 경우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때는 2014년 농림업 생산액 47조 2,922억 원을 기준으로, 총 생산액의 최대 10%인 4조 7,292억 원까지 보조금 확대가 가능함.
- 하지만 만약 선진국 지위를 부여받을 경우에는 최대 2조 3,646억 원으로 보조금이 제한됨. 후자의 경우 2011년도 국내 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조 지급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현재 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조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줄이지 않는 이상 쌀의무자조금사업에 대한 대응자금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존재하나,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표 4-3. 국내 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조 지급 현황

단위: 억 원

지원형태	지원사업	2009	2010	2011
시설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업유통가공구조개선(09) • 도축장구조조정(09~11) 	227.5	14.3	24.5
투입재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거래이동차량지원(09) • 우수품종증식보급(09~10) • 고부가가치종자산업육성(10~11) • 논소득기반다양화(11) 	58.6	51.1	1,124.7
용자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활성화(09~11) • 산지유통활성화(09~11) 	122.0	120.4	136.6
농작물재해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작물재해보험사업(09~11) 	858.5	1,022.9	1,291.8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자조금지원(09~11) • 축산자조금(09~11) • 농어촌공동체회사육성(11) 	290.9	282.8	287.3
합계		1,557.5	1,491.5	2,864.9

자료: 문한필 외(2014).

- 다만,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쌀의무자조금뿐만 아니라 모든 자조금에 대해 자조금 사용 용도에 따라 지출되는 예산을 농가조성금과 정부보조금으로 분리하여, 농가조성금은 소비 촉진 및 홍보, 수급안정 사업 등에 주로 사용하고, 정부보조금은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 정부의 일반서비스에 해당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 정부보조금이 허용보조로 분류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자조금사업에서 시행하는 소비 촉진 및 홍보, 수급안정 사업 등은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에 지출되는 정부보조금은 감축대상보조로 분류될 수 있음.

7. 의무자조금 미납 시 제재조치

- 현행 법에서 농가 및 대납기관, 수납기관이 거출금을 미납할 시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는 과태료 부과이며, 과태료의 액수가 적지 않은 만큼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실효성이 있는 제재조치라고 판단됨. 다만, 자조금관리위원회는 과태료 부과 외 추가적 교육 및 지원사업 대상에서 미납자를 제외시켜 형평성 제고 및 가입율 제고를 도모해야 함.
-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농수산물의 경우 농수산업자 또는 대납기관이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납부일자 이내에 총회에서 의결한 의무거출금의 금액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 제37조2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또한, 쌀의무자조금사업과 관련하여 수납기관이 필요한 경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

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무자조금의 수납을 위탁할 수 있으며, 만약 수납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거출금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하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다만 수납기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휴업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할 시 농수산업자 및 대납기관의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할 수 있으며,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시행규칙 제22조에 명시된 전쟁, 천재지변, 대규모 정전(停電),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전산시스템 장애임.
- 법 20조제1항과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수납기관의 대표자에게 의무거출금의 100분의 7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수납에 대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음.

제 5 장

요약 및 결론

- 198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국제교류의 증가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식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소비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쌀 소비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특히, 최근 10년 동안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2005년 80.7kg에서 2015년 62.9kg으로 22.1% 급감함.
- 쌀 생산량도 재배면적이 줄어들어 따라 감소하고 있으나, 영농기술의 향상 및 고능력 품종 개발 등으로 단수가 증가하여 생산량 감소폭은 소비량 감소폭에 비해 낮은 수준임. 쌀 소비량이 2005년에서 2015년 사이 22.1% 감소한 것에 비해 생산량은 9.3% 감소에 그침.
- 최근 들어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간편식 및 외식 수요가 증가하고,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잡곡을 중심으로 한 기타 양곡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어, 쌀 소비량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급격한 쌀 소비감소에 기인한 국내 쌀 수급불균형 및 수입물량 증대로 쌀 산업의 위기는 지속되고 있으나, FTA 협정 및 WTO/DDA 협상 등으로 정부의 시장개입 범위는 점차 축소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쌀 전업농을 중심으로 한 일부 생산자 단체들은 적극적인 소비촉진 활동을 통해 소비 감소 속도를 늦추고, 생산자들의 자구적인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쌀 의무자조금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요구하고 있음.
- 2015년 전국 쌀 전업농을 대상으로 실시한 ‘쌀 자조금 제도 도입을 위한 설문조사’결과 응답농가의 88.2%가 쌀 자조금사업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79.8%가 쌀 자조금사업에 찬성하고, 78.8%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쌀 자조금사업이 도입돼야 한다고 응답함.
- 우리나라에서 의무자조금제도는 축산분야에 가장 먼저 도입되어, 2004년 한돈의무자조금을 시작으로 현재는 한돈, 우유, 닭고기, 계란, 오리까지 의무자조금이 확대되었으며, 자조금 사업은 한우의 경우 자조금 1원당 17.58원의 소득 증대 효과를 창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임.
- 먼저 시행된 축산물자조금을 통해 의무자조금사업의 성과가 검증됨에 따라 2015년에는 농산물 최초로 인삼의무자조금이 도입되었으며, 원예 등 다른 농업 부문에서도 의무자조금제도의 도입이나 임의자조금에서 의무자조금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임.
- 본 연구는 쌀 의무자조금제도 도입의 필요성 제기에 따라 쌀 산업에 의무자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거출대상 및 방식 등 의무자조금 도입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법률 및 문헌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살펴봄.
- 쌀 의무자조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생산자들의 의무자조금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다음으로는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이에 대한 시행령, 시행규칙 및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지침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도입을 준비해야 함.

- 2016년 현재 자조금단체가 의무자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의무자조금의 설치를 승인하고, 농산업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이 의무자조금 설치에 찬성해야 함.
- 하지만 쌀의 경우 현재 정부의 승인을 받은 자조금단체 및 대의원회 등이 구성되지 않았으므로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해서는 먼저, 농협이나 쌀전업농 중앙연합회 등 의무자조금 도입에 적극적인 비영리법인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자조금준비위원회를 설립하여 의무자조금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무자조금제도 도입의 1단계 조치로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해야 함.
- 자조금 설치계획이 승인되면 자조금준비위원회는 2단계 조치로 대의원회 설립 및 대의원선거 준비를 위한 대의원회 설립계획서, 선출구역, 선거인, 선거 일시 및 장소, 대의원 후보자의 등록 장소, 선거인 명부 등을 준비하여 대의원 선거를 실시해야 함.
- 대의원 선거를 통해 대의원이 선출되면 자조금준비위원회는 3단계 조치로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의무자조금 설치에 대한 찬반투표 시행하고, 정부의 의무자조금 설치가 승인되면 의무자조금제도 도입은 완료됨.
- 쌀 의무자조금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대의원회에서 의무자조금사업에 찬성해야하므로 자조금사업 도입 준비과정에서 자조금 거출대상 및 방식을 합리적으로 도출하여 생산자들의 의무자조금 도입 및 참여에 대한 의지를 고취시켜야 함.
- 먼저, 거출대상을 살펴보면, 쌀 의무자조금 도입 초기 단계에서 자조금 거출대상을 생산 농가 외에 가공업자, 유통업자, 수입업자 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지정할 경우 거출금 부담 경감 및 형평성 확보 등의 장점은 있으나, 다

수의 소규모 산업 종사자가 존재하는 쌀 산업의 특징상 초기 공감대 형성이 어렵고 의무자조금 도입 과정에서 다수의 개인 간, 단체 간 이견으로 자조금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움.

- 따라서 의무자조금 도입 초기에는 자조금 도입에 적극적인 생산자를 중심으로 거출 대상을 정하고, RPC와 도정업체 등 기타 쌀 산업 종사자들은 자발적 참여 의지가 있는 대상에 한하여 지원금 형태로 자조금을 거출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거출 대상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 또한, 소규모 영세농가들은 판매물량이 적어 소비촉진 등의 자조금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원활한 자조금사업 도입을 위해서는 먼저,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를 대상으로 의무자조금을 거출하는 것이 현실적임.
- 따라서 의무자조금 도입 초기 거출 대상은 2ha 이상의 재배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이유는 이들 농가의 재배면적 비중이 전체 재배면적의 50.3%로 절반에 해당하고 소득도 쌀 재배농가 평균소득의 1.4~8.8배에 달하므로 생산에서의 대표성과 함께 재정부담 여력도 있는 농가들이기 때문임.
- 다음으로 거출 방식을 살펴보면, 쌀 자조금에 적용할만한 거출 방식은 농가 직접 납부 방식, 1차 가공업자(RPC 및 도정업체) 위탁 거출 방식, 그리고 쌀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정직불금에서의 공제 거출 방식 등임. 하지만 이중 고정직불금 공제 거출 방식은 직불금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므로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금의 강제적 거출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에 위배될 수 있음.

- 1차 가공업자(RPC 및 도정업체) 위탁 거출의 경우 납입관리는 용이하나 정확한 거래물량 파악이 어렵고, 수수료 제공 시에는 수수료만큼 거출금이 감소하고 수수료 미제공 시에는 거출에 대한 유인이 부족하다는 단점을 가짐. 또한, 도정업체는 대다수가 소규모 업체로 수가 많고 유통량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정업체를 통한 위탁거출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
- 농가 직접 납부는 농가 동의에 의해 자동 납부 형식으로 거출하면 납입관리가 용이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나, 사업 시행 초기에 거출 대상 농가 전체의 동의를 얻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짐.
-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따라 RPC 유통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는 RPC 위탁 거출의 효율성 및 편의성이 높음. 하지만 현재 현실적으로 납입관리가 가능한 위탁 대상은 RPC 정도이나 현재 RPC를 통한 유통물량은 약 60% 정도에 불과해 거출 대상 목표의 일부만이 거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RPC에서만 거출 시 농가들이 수익보전을 위해 소규모 도정업체로 거래처를 변경할 유인을 제공하여 실제 거출율은 더욱 낮아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함.
- 따라서 현재로서는 농가 직접 납부가 행정비용은 상대적으로 높더라도 자조금의 본래 취지에 가장 적합하고 관련 법 위반 가능성 및 자조금 미납 유인에 따른 유통구조 왜곡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쌀 의무자조금 도입 초기 거출 방식으로는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됨.
- 이 경우, 행정비용 최소화를 위해 자조금관리위원회와 직불금 지급을 전담하고 있는 농협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즉, 자조금관리위원회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농협조직과 협력하여 직불금 대상 농가로부터

의무자조금 납부에 대한 자동이체 동의서를 받고, 직불금이 지급되는 농협 계좌에서 고정직불금 지급 당일 또는 차일에 거출금을 자동으로 자조금관리 위원회로 송금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앞서 고려한 의무자조금 거출대상인 재배면적 2ha 이상 농가의 2ha 초과 면적에 대해 법 한도 내에서 자조금을 거출할 경우, 거출률(0.1%~1.0%)에 따라 최소 22억 원에서 최대 220억 원의 농가거출금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소비촉진활동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자조금사업의 특성상 사업 계획 및 운영계획수립 이전의 경제성 평가는 불가능하므로 도입 초기 적정 농가거출금은 현재 자조금사업을 실시하는 품목 중 생산액이 비슷한 품목의 농가거출금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통계에 의하면 2014년 농업부문 생산액은 쌀이 8,154십 억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돼지 6,615십억 원, 한우 4,026십억 원 순임. 따라서 쌀 의무자조금제도 도입 초기에는 한돈과 한우자조금의 2014년 농가거출금인 123억 원(한돈)과 186억 원(한우)을 참고하여 최소 100억 원 이상의 농가거출금을 목표로 거출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함.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1) 쌀 의무자조금제도는 현행 법 체계 안에서도 도입이 가능하며, 2) 자조금 도입 초기 적정 거출대상 및 방식은 재배면적 2ha 이상 농가의 2ha 초과 면적에 대해 산지가격의 0.5%(총 농가거출액은 약 100억 원)를 농가 직접 납부 방식으로 거출하는 것임.
- 마지막으로 의무자조금제도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도입 준비의 첫 단계인 자조금준비위원회의 설립에서 대의원회 선거까지 다양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생산자와 생산자단체의 의무자조금제도 도입에 대한 의지임.

부 록 1

축산자조금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31.] [법률 제12950호, 2014.12.3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2.31.>

1. "축산물"이란 소, 돼지, 닭 등에서 생산된 식육, 젓, 알과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생산물을 말한다.
2. "축산업자"란 국내에서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가축을 사육하는 자를 말한다.

3. "축산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축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단위의 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4. "축산자조금(畜産自助金)"이란 축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등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용되는 자금을 말한다.
5. "의무축산자조금"이란 축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이하 "의무거출금"이라 한다)을 주요 재원으로 설치된 축산자조금을 말한다.
6. "임의축산자조금"이란 축산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이하 "임의거출금"이라 한다)을 주요 재원으로 설치된 축산자조금을 말한다.

제3조(축산자조금의 설치)

- ① 축산단체가 축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축산물별로 의무축산자조금(이하 "의무자조금"이라 한다)과 임의축산자조금(이하 "임의자조금"이라 한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 ② 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쇠고기의 경우에는 한우와 육우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자조금을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축산물에 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조(자조금의 용도)

- ①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2. 축산업자, 소비자, 제18조제2항에 따른 중도매인등과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4. 축산물의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조사와 연구
 5. 자조금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
 6. 그 밖에 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제26조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호 및 제25조제2호에 따른 정부 출연금 또는 지원금은 제1항제1호 중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의 광고(방송 프로그램에서 축산물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는 제외한다)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2장 의무자조금

제5조(의무자조금의 설치)

- ① 축산단체는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설치 이유, 재원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축산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실시된 투표의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에 따른 투표의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6조(의무자조금의 재원)

의무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의무거출금
2.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작업장의 영업자, 「사료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제조업자 등 축산 관련 영업자의 지원금
4. 의무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입금

제7조(의무거출금의 한도)

- ① 의무거출금의 한도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천분의 5 이내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발표하는 평균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급과잉과 그 밖의 사유로 해당 가축 또는 축산물의 시장가격이 현저하게 하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반영하여 그 평균 거래가격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조(대의원의 선출 등)

- ① 축산단체는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 등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등을 선출구역(이하 "선출구"라 한다)으로 하여 축산업자 중에서 대의원을 선출한다. 이 경우 축산단체가 대의원의 선출에 지출한 비용은 의무자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 ②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③ 대의원의 총수는 30명 이상 250명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은 선출구의 축산업자 수 및 가축사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대의원의 선출은 선출구에 있는 축산업자의 과반수 또는 선출구의 가축 또는 축산물의 3분의 2 이상을 사육하거나 생산하는 축산업자가 투표에 참여하여야 한다.
- ⑤ 대의원 당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된다.
 1. 입후보자 수가 선출구별로 배정된 대의원 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 무투표 당선
 2. 입후보자 수가 선출구별로 배정된 대의원 수보다 많은 경우: 선출구별로 배분된 대의원의 수까지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 다만, 2명 이상이 같은 수의 득표를 하여 그 선출구에 배분된 대의원 수가 초과될 때에는 그 같은 수의 득표자 중에서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4항에 따른 대의원의 선출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 축산업자의 수 및 축산업자별 가축사육 마릿수를 조사한 최근 1년 이내의 행정통계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2013.3.23.>

- ⑦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등록·선거 및 대의원의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9조(대의원의 보궐선거)

- ① 축산단체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 중에 결원이 발생하면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궐선거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대의원회의 설치)

축산단체는 의무자조금과 관련된 의사 결정을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를 둔다.

제11조(대의원회의 구성)

- ① 의원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및 2명 이상 5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 ② 대의원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사람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대의원회의 부의장은 대의원 중 의장이 추천하고 대의원회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감사는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사람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대의원회의 운영)

- ① 의장은 대의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한다.
- ② 대의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재적 대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요구할 때, 제22조제2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1개월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대의원회의 직무)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제23조제3항에 따라 폐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의무거출금의 금액
3. 의무자조금 사업의 계획 및 결산
4.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의무자조금 운용에 대한 감사
6.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 선출
7. 제22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8. 대의원회 운영규정의 제정·개정
9. 그 밖에 의장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의무자조금을 설치한 축산단체는 의무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1호의 대의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사람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
 3. 축산단체 중 전국단위 단체의 장
 4. 「농업협동조합법」 제126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경제 대표이사나 그가 지명하는 사람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의 대표나 그가 지명하는 사람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대표나 그가 지명하는 사람
 7. 축산단체가 추천하는 학계 및 생산·가공·유통·홍보마케팅의 각 분야의 전문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업계나 기관이 추천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 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둔다.

- ③ 위원장은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⑥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 경비 등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 ⑦ 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관리위원회의 직무)

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의 조달·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무거출금의 수납과 의무자조금의 관리 및 집행
2. 의무거출금의 수납 위탁 관련 수수료 결정
3.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의 수립·변경과 결산 및 그 내용의 대의원회 보고
4. 대의원회에서 위임하는 업무
5.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개정
6. 의무자조금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의무자조금 사무국의 설치 등)

- ① 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무자조금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의무거출금의 납부)

- ①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경우 축산업자는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위탁 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2항,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같다)할 때 또는 축산물을 판매할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의무거출금의 금액을 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축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도매인(仲都賣人) 및 식육판매업자 등(이하 "중도매인등"이라 한다)에게 의무거출금을 관리위원회에 대납(代納)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등은 해당 가축을 도축용으로 판매하였거나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축산업자에게 의무거출금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관리위원회는 의무거출금 납부안내서의 발송이나 공시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납부 대상, 납부 금액, 납부 방법 등 의무거출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축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관리위원회는 의무거출금 납부안내서를 축산업자 또는 중도매인등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목별 의무거출금의 납부 방법 등 의무거출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9조(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거출금의 수납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작업장을 대표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위원회는 수납을 위탁받은 작업장 대표자(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수납기관은 영업정지, 휴업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축산업자 또는 중도매인등의 의무거출금 수납 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 ③ 수납기관은 축산업자 또는 중도매인등이 의무거출금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 가축 또는 축산물의 도축 또는 집유(集乳) 등을 거부할 수 있다.
- ④ 수납기관은 의무거출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20일까지 해당 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가 지연될 경우 지연된 금액에 하루에 1만분의 3의 단리를 지연된 기간만큼 적용하여 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⑤ 축산업자 또는 중도매인등이 수납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한 의무거출금은 관리위원회가 징수하여야 한다.
- ⑥ 수납기관은 의무거출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과오납금의 환급)

관리위원회는 축산업자가 착오 등으로 납부한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관리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축산업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1조(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 ① 의무자조금은 관리위원회가 운용·관리한다.
- ② 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2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
되, 지출계획은 사업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 ④ 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 운용계획 중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
려면 의무자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이 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⑥ 관리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⑦ 의무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은 자조금 조성규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자조금의 조성, 운용
계획 수립·변경 절차,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 의무자조금의 운
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2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 ① 대의원은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의원회에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의원
회에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자조금 운영과 관련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2. 제31조에 따른 검사 결과 해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의무자조금의 폐지)

- ① 축산업자는 의무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산업자의 10분의 1 이상 또는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가축 또는 축산물의 4분의 1 이상을 사육하거나 생산하는 축산업자의 서명을 받아 대의원회에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축산업자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의무자조금의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자의 2분의 1 이상이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된 때부터 의무자조금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의결되거나 제3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요청된 때에는 즉시 관리위원회 및 수납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관리위원회 또는 수납기관을 통한 의무거출금 수납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의결되거나 제3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요청되기 전에 납부된 의무거출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납부가 지연되었던 의무거출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 사유와 찬반투표의 일정 등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폐지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⑥ 의장은 제2항에 따른 투표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른 폐지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 또는 폐지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

정 2013.3.23.>

- ⑦ 의무자조금이 폐지될 경우 의무자조금의 집행 후 남은 금액의 처리 방법 등 의무자조금 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정한다.

제3장 임의자조금

제24조(임의자조금의 설치)

축산단체가 임의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임의자조금의 설치 이유, 재원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축산업자의 100분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5조(임의자조금의 재원)

임의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임의거출금
2.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작업장의 영업자, 「사료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제조업자 등 축산 관련 영업자의 지원금
4. 임의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입금

제26조(임의자조금위원회의 설치)

임의자조금을 설치한 축산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의자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임의거출금의 금액
2. 임의자조금의 폐지
3. 임의자조금의 운용계획 수립·변경과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1호의 축산업자로 한다.
 1. 축산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축산업자
 2. 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3. 축산단체의 장이 학계와 생산·가공·유통의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소비자 중 지명하는 사람
-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감사 2명을 둔다.
- ③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 ④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를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6조제2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8조(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 ① 임의자조금은 축산단체가 운용·관리한다.
- ② 축산단체는 임의자조금 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자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③ 축산단체는 임의자조금에 관한 회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④ 임의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제21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29조(임의자조금의 폐지)

- ① 축산업자는 임의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산업자 100분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아 위원회에 임의자조금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임의자조금 폐지에 관한 찬반투표, 보고, 공표 등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장"으로, "대의원회"는 "위원회"로, "의무자조금"은 "임의자조금"으로, "관리위원회 및 수납기관" 및 "관리위원회 또는 수납기관"은 각각 "축산단체"로, "의무거출금"은 "임의거출금"으로 본다.

제4장 보칙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자조금이 아니면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 또는 그 생산물의 용어를 사용한 자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1조(지도·감독)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축산단체, 관리위원회, 위원회 및 수납기관(이하 "축산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조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실 등을 출입하여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

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축산단체등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검사목적은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단체등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2013.3.23.>

제5장 벌칙

제33조(벌칙)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양벌규정)

축산단체의 대표자나 축산단체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축산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축산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축산

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조금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자
 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거출금 수납 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한 자
 3. 제23조제2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조금의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4항 전단(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납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를 위반하여 자조금과 동일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한 날 또는 축산물을 판매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축산업자로부터 받은 의무거출금을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한 날 또는 축산물을 판매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납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6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4.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③ 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10.22., 2013.3.23.>

부칙 <제12950호, 2014.12.31.>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919호, 2014.12.3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의원의 총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에 따른 대의원의 총수는 가축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2.6.29.>

1. 한우: 250명
2. 젖소: 130명
3. 돼지: 150명
4. 육계: 80명
5. 산란계: 80명
6. 육우: 30명
7. 말·양·오리·사슴·토끼·칠면조·꿀벌·거위·메추리 및 꿩: 각 50명

제3조(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 등)

-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② 축산단체는 대의원 선거일 3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선출구별 대의원 수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4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6.29., 2013.3.23., 2013.4.22.>

1.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2. 법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4조의2(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② 삭제 <2013.4.22.>

부칙 <제25919호, 2014.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12.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0호, 2015.12.2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축산물의 종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생산물"이란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사슴, 꿀벌, 오리,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및 꿩에서 생산된 식육, 뿔, 젖, 벌꿀 및 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3조(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의 구성 등)

-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하나의 축산물에 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공동으로 하나의 축산자조금을 설치하려면 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이하 "공동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공동준비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축산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축산업자 8명 이내
 2. 축산단체의 임원 4명 이내
 3. 학계 인사, 소비자 및 유통 전문가 각 1명

- ③ 공동준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의무축산자조금(이하 "의무자조금"이라 한다) 설치계획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임의축산자조금(이하 "임의자조금"이라 한다) 설치계획의 수립
 - 2. 그 밖에 의무자조금 또는 임의자조금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 ④ 공동준비위원회는 법 제14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존속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준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준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의무자조금의 명칭
- 2. 의무자조금의 설치 이유와 목적
- 3. 의무자조금의 재원확보 방안 및 운용계획
- 4. 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공동으로 하나의 의무자조금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운용의 방법 및 절차

제5조(투표의 절차 및 방법 등)

- ① 축산단체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 설치에 관한 대의원회의 투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축산단체의 장이 투표를 위한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축산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의원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목적 및 안전과 회의 일시·장소를 적은 회의 소집 통지서를 대의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 ③ 투표는 1인 1표로 하며, 무기명(無記名) 비밀투표로 한다.

제6조(투표 결과의 공표)

축산단체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실시된 투표의 결과를 축산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일간지
2. 농·축산 관련 신문
3. 축산단체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제7조(가축사육 마릿수 등의 보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보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보고의 내용에는 축산업자별로 가축의 종류, 농장명, 대표자의 성명·주소·연락처 및 가축사육 마릿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2015.12.23.>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가축을 사육하는 자

제8조(대의원 후보자의 자격·등록 및 선거 등)

-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대의원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의 자격은 선거공고일 현재 선출구에 주소나居所(居所) 또는 사업장을 둔 축산업자로 한다.

- ②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투표일 15일 전까지 축산단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축산단체는 투표일 30일 전까지 선거권자를 확정하고, 투표 일시 및 장소, 선거인명부 및 선출구별 대의원 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축산단체는 투표일 10일 전까지 후보자 명부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⑤ 투표는 단기명(單記名) 또는 연기명(連記名)에 의한 비밀투표로 하며, 투표자 1인 1표로 한다.
- ⑥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하되, 우편에 의한 투표는 투표일 오후 6시까지 축산단체가 지정한 장소에 도착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
- ⑦ 축산단체는 투표 장소에 투표자 명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⑧ 축산단체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즉시 당선자의 주소 및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축산단체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이란 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수납기관에 대한 수수료 지급)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수료는 의무거출금의 100분의 7 이내의 범위에서 관리위원회가 수납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과오납금의 환급 절차)

- ① 법 제20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환급은 축산업자가 환급을 청구한 날 또는 관리위원회가 과오납금을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관리위원회는 반기(半期)별로 과오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였을 때에는 환급 내용을 수납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의무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공시)

관리위원회는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의무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11월 30일까지 각각 대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13조(의무자조금의 운용에 드는 비용)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운용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의무자조금 조성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자조금 조성액의 100분의 8
2. 의무자조금 조성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의무자조금 조성액의 100분의 10

제14조(의무자조금 폐지 요청 등에 대한 공표)

법 제2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15조(임의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법 제24조에 따른 임의자조금 설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등록 및 선거 등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6.]

부칙 <제180호, 2015.12.2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까지 생략

⑨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별표 1]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제3조제1항 관련)

$$\begin{aligned} \text{선출구별 대의원 수} = & \left(\frac{\text{선출구별 축산업자 수}}{\text{전체 축산업자 수}} \times \text{대의원 총수} \times 0.5 \right) \\ & + \left(\frac{\text{선출구별 가축사육 마릿수}}{\text{전체 가축사육 마릿수}} \times \text{대의원 총수} \times 0.5 \right) \end{aligned}$$

비고: 선출구별 축산업자 수 및 전체 축산업자 수와 선출구별 가축사육 마릿수 및 전체 가축사육 마릿수는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보고에 따라 산정한다.

[별표 2] <개정 2013.4.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조금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1호	300	500	700
나.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한 날 또는 축산물을 판매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1호	100	200	300

다. 법 제18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축산업자로부터 받은 의무거출금을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한 날 또는 축산물을 판매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2호	100	200	300
라.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거출금 수납 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2호	300	500	700
마.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3호	100	200	300
바. 법 제23조제2항(법 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축산자조금의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3호	400	600	900
사. 법 제23조제4항 전단(법 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납을 중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4호	300	500	700
아.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축산자조금과 동일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5호	500	700	1,000
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4호	100	200	300

부 록 2

농수산물자조금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5.1.16.] [법률 제12807호, 2014.10.1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물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농수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한다. 다만,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축산물은 제외한다.
2. "농수산물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어업인
 - 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 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 라. 그 밖에 농수산물자조금의 효율적인 조성·운용 및 거출금의 공정한 분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농수산물의 품목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
3. "자조금단체"란 제4호에 따른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농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4. "농수산물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이란 자조금단체가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수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의무거출금"이란 농수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6. "임의거출금"이란 농수산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7. "의무농수산물자조금"이란 의무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설치된 자조금을 말한다.
 8. "임의농수산물자조금"이란 임의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설치된 자조금을 말한다.

제3조(농수산물자조금의 설치)

- ① 하나의 농수산물 품목에는 의무농수산물자조금(이하 "의무자조금"이라 한다) 또는 임의농수산물자조금(이하 "임의자조금"이라 한다) 중 하나의 자조금만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특성을 고려할 때 2개 이상의 품목을 통합하거나 하나의 품목을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을 통

합하거나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제2항에 따라 품목을 통합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자조금단체가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자조금단체로 통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조(자조금의 용도)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2. 농수산업자, 소비자,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납기관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농수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4.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
5. 자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6. 자조금단체 가입을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의무 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제24조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출연 및 지원)

- ① 정부는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조금에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의무자조금

제6조(의무자조금의 설치)

- ① 자조금단체가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설치 이유, 재원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의무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이하 "의무자조금단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된 투표의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요건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7조(의무자조금의 재원)

의무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3.23.>

1. 의무거출금
2.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수출·수입 등과 관련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지원금
4. 의무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익금

제8조(의무거출금의 한도)

- ① 의무거출금의 한도는 농수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천분의 10 이내로 한다. 다만, 자조금단체는 해당 농수산물의 특성상 의무거출금의 산정 기준 또는 거출한도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의 승인을 받아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은 제28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이 작성하는 평균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은 공급·수요의 과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현저하게 변동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반영하여 그 평균 거래가격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9조(총회의 설치 등)

- ① 의무자조금단체에 총회를 둔다.
- ② 총회는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로 구성하며 의장 1명, 부의장 1명 및 2명 이상 5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 ③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권한 및 직무에 관한 사항
 2. 의장, 부의장 및 감사 후보자의 자격·등록·선거에 관한 사항
 2.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선출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총회의 운영)

-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의무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한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3.3.23.>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2. 재적 농수산업자(제28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하는 농수산업자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제13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4. 제15조제2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② 총회는 재적 농수산업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농수산업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1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재적 농수산업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농수산업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총회의 의결사항)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1.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제21조제4항에 따라 폐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의무거출금의 금액 및 한도
 3. 의무자조금의 사업계획·운용계획 및 결산
 4. 운용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 변경(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감사

6. 제9조에 따른 총회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선출
7.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 선출
8. 제14조제2항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9. 제15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10.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납부면제의 기준
11. 총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12. 그 밖에 의장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대의원회)

- ① 농수산업자의 수가 150명을 초과하는 의무자조금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③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④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등록·선거 및 대의원의 선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의무자조금단체는 의무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제14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1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농수산업자 중 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제12조에 따라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사람)
 2.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명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의 대표나 그가 지명하는 사람
 4.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소비자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대표나 그가 지명하는 사람
 5. 의무자조금단체가 추천하는 학계 및 생산·가공·유통·수출·홍보 마케팅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중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관련 업계가 추천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 ②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두고, 위원장은 총회(제12조에 따라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선출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 ⑤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자격요건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 ① 농수산업자 또는 대의원은 재적 농수산업자 또는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자조금 운용과 관련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2. 제32조에 따른 검사 결과 해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업무)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무거출금 거출시점 및 납부일자의 결정
2. 의무거출금의 수납
3. 의무자조금 사업계획과 운용계획의 수립·변경과 결산 및 그 내용의 총회 보고
4. 의무자조금의 운용, 관리 및 집행
5.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납기관의 지정
6. 의무거출금의 수납위탁 관련 수수료 결정
7.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개정
8.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의 제정·개정 및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총회에서 위임하는 업무

제17조(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지출계획은 사업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 ③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에 관한 회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④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 운용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면 의무자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이 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⑥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⑦ 의무자조금 운용에 사용되는 비용은 자조금 조성규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자조금의 조성, 운용 계획 수립·변경 절차,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 의무자조금의 운

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8조(사무국의 설치 등)

-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무자조금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개 이상의 품목을 통합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국의 운영은 사무국 운영규정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의무거출금의 납부)

- ①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농수산물의 경우 농수산업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납부일자 이내에 총회에서 의결한 의무거출금의 금액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납부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영세 농수산업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농수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의무거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무거출금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대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거출금을 대납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대납기관"이라 한다)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납부일자 이내에 농수산업자의 의무거출금을 대납하여야 하고, 대납 후 해당 농수산업자에게 의무거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거출금 납부안내서의 발송이나 공시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납부대상, 납부금액, 납부방법 등 의무거출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농수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목별 납부방법 등 의무거출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0조(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무자조금의 수납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수납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의 대표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수납기관은 영업정지, 휴업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수산업자 및 대납기관의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 ③ 수납기관이 의무거출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20일까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가 지연될 경우 지연된 금액에 하루에 1만분의 3의 단리를 지연된 기간만큼 적용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④ 농수산업자 및 대납기관이 수납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한 의무거출금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징수하여야 한다.
- ⑤ 수납기관은 의무거출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거출금의 수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1조(의무자조금의 폐지)

- ① 농수산업자는 의무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재적 농수산업자의 1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총회에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 사유와 찬반투표의 일정 등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폐지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의무자조금의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적 농수산업자의 2분의 1 이상이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된 때부터 의무자조금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 ⑤ 의장은 제3항에 따른 투표 결과 또는 제4항에 따른 폐지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 또는 폐지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의무자조금단체 농수산업자의 해당 농수산물 생산량 또는 생산액이 전국 생산량 또는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정부의 출연 또는 지원을 중단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개선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의무자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⑦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의결되거나 제4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요청된 경우 또는 제6항 단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폐지를 명한 경우에는 즉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수납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수납기관을 통한 의무거출금 수납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의결되거나 제4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요청되기 전 또는 제6항 단서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명하기 전에 납부된 의무거출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납부가 지연되었던 의무거출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⑧ 의무자조금이 폐지될 경우 의무자조금의 집행 후 남은 금액의 처리 방법 등 의무자조금 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다만,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집행 후 남은 금액은 정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3장 임의자조금

제22조(임의자조금의 설치)

자조금단체가 임의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임의자조금의 설치 이유, 재원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은 다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3조(임의자조금의 재원)

임의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3.23.>

1. 임의거출금
2.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수출·수입 등과 관련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지원금
4. 임의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입금

제24조(임의자조금위원회의 설치)

임의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이하 "임의자조금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임의자조금위원회를 둔다.

1. 임의자조금의 폐지
2. 임의거출금의 금액
3. 임의자조금의 운용계획 수립·변경과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5조(임의자조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임의자조금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1호의 농수산업자로 한다. <개정 2013.3.23.>

1. 임의자조금단체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농수산업자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3. 임의자조금단체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학계 및 생산·가공·유통·수출·홍보마케팅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소비자

- ②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를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③ 임의자조금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감사 2명을 두며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 ④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 ⑤ 임의자조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4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의자조금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6조(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 ① 임의자조금은 임의자조금단체가 운용·관리한다.
- ② 임의자조금단체는 임의자조금 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자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③ 임의자조금단체는 임의자조금에 관한 회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④ 임의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은 임의자조금 조성규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제27조(임의자조금의 폐지)

- ① 농수산업자는 임의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의 재적 농수산업자(임의자조금단체에 소속된 농수산업자를 말한다) 100분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아 임의자조금위원회에 임의자조금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임의자조금 폐지에 관한 찬반투표, 보고, 공표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장"으로, "총회"는 "임의자조금위원회"로, "의무자조금"은 "임의자조금"으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수납기관" 및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수납기관"은 각각 "임의자조금단체"로, "의무거출금"은 "임의거출금"으로 본다.

제4장 보칙

제28조(통계의 작성·관리 등)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매년 자조금단체 등에 관련 통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통계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 이용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에 따라 통계를 작성·관리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33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 및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과오납금의 환급)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단체는 농수산업자가 착오 등으로 납부한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단체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농수산업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자조금이 아니면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용어를 사용한 자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1조(자조금 운용 평가)

- ① 의무자조금단체 및 임의자조금단체는 자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2년마다 받고 그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15.>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평가업무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15.>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평가의 절차 및 내용, 평가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0.15.>

제32조(지도·감독)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자조금단체,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임의자조금위원회, 대납기관 및 수납기관(이하 "자조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조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실 등을 출입하여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자조금단체등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검사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

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그 밖의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장 벌칙

제34조(벌칙)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1.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제36조(양별규정)

자조금단체의 대표자나 그 단체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자조금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자조금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에 따른 자조금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자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거출금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한 자
 3. 제21조제3항(제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조금의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자조금을 폐지한 자
 4. 제21조제7항 전단(제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납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를 위반하여 자조금과 동일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의무거출금 납부일자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의무

- 거출금 납부일자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대납하게 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농수산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5.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7.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919호, 2014.12.3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부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 등)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 1.가.의 「농업에 관한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조금단체가 조성한 의무거출금 또는 임의거출금 중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을 예산 내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자조금단체의 대표성, 조직화 정도, 사업역량, 농수산물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 조성액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출연금등을 받으려는 자조금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출연금등의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자조금의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
 2. 자조금의 조성 규모, 조성방법 및 최근 5년간(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운영 실적
 3. 자조금의 사용액 및 사용 내역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등 신청의 타당성 및 제2항에 따른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출연금등의 지급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조(대의원 후보자의 자격·등록 및 공고 등)

-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의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 후보자의 자격은 선거 공고일 현재 제4조제2항에 따른 선출구역에 주소나 거소(居所) 또는 사업장을 둔 농수산업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로 한다.
- ② 의무농수산업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이하 "의무자조금단체"라 한다)는 대의원 선거일 30일 전까지 선거인을 확정하고, 선거 일시 및 장소, 대의원 후보자의 등록 장소, 선거인 명부 및 제4조제3항에 따른 선출구역별 대의원 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대의원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대의원 선거일 15일 전까지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장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의무자조금단체는 대의원 선거일 10일 전까지 대의원 후보자 명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대의원의 선출 등)

- ① 의무자조금단체는 법 제12조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별 농수산업자의 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
1. 농수산업자의 수가 10만명 이상: 150명 이상 250명 이하
 2. 농수산업자의 수가 1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80명 이상 150명 미만

3. 농수산업자의 수가 5천명 이상 1만명 미만: 50명 이상 80명 미만
 4. 농수산업자의 수가 1천명 이상 5천명 미만: 30명 이상 50명 미만
 5. 농수산업자의 수가 1천명 미만: 20명 이상 30명 미만
- ② 의무자조금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으로 선출구역을 확정하여 대의원 선거를 실시한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
 2. 시·군·자치구별
- ③ 제2항에 따른 선출구역별(이하 "선출구별"이라 한다) 대의원 수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농수산업자 수와 생산량·출하량은 법 제28조에 따라 작성된 최근 통계를 기준으로 한다.
- $$\text{선출구별 대의원 수} = \left(\frac{\text{선출구역 내의 해당 농수산물 농수산업자 수}}{\text{해당 농수산물 농수산업자 수 전체}} \times \text{해당 농수산물 대의원 총수} \times 0.5 \right) + \left[\frac{\text{선출구역 내의 해당 농수산물 생산량(생산량 통계가 없을 경우 출하량)}}{\text{해당 농수산물 생산량 전체(생산량 통계가 없을 경우 출하량)}} \times \text{해당 농수산물 대의원 총수} \times 0.5 \right]$$
- ④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투표에 참여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선출구역의 선거인의 과반수
 2. 해당 선출구역의 농수산물의 3분의 2 이상을 생산하거나 출하하는 선거인
- ⑤ 투표는 단기명(單記名) 또는 연기명(連記名)에 의한 비밀투표로 하며, 투표자 1명이 1표를 행사한다.
- ⑥ 투표는 직접 하거나 우편에 의하여 하되, 우편에 의한 투표는 투표일 오후 6시까지 의무자조금단체가 지정한 장소에 도착한 것만 유효하다.
- ⑦ 의무자조금단체는 대의원 선거 당일 투표 장소에 선거인 명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⑧ 대의원 당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된다.
1. 대의원 후보자 수가 선출구별로 배정된 대의원 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 무투표당선. 이 경우 해당 의무자조금단체의 당선자 수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두어야 하는 대의원 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대의원 후보자 수가 선출구별로 배정된 대의원 수보다 많은 경우: 선출구별로 배분된 대의원 수까지 많은 표를 얻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다만, 2명 이상이 같은 수의 득표를 하여 그 선출구역에 배분된 대의원 수가 초과될 때에는 그 같은 수의 득표자 중에서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⑨ 의무자조금단체는 당선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당선자의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일간지
 2. 농수산 관련 신문
 3. 의무자조금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6항에 따른 우편에 의한 투표 방법과 그 밖에 대의원 선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의무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대의원의 보궐선거)

- ① 의무자조금단체는 제4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 중에 결원(缺員)이 발생하면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대의원 수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두어야 하는 대의원 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궐선거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제6조(통계의 작성·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조금을 설치하였거나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농수산물 품목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매년 자조금단체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농수산업자의 수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평균 거래가격. 이 경우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도매가격의 통계가 없을 경우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3. 재배면적과 생산량 및 생산액. 다만, 생산량과 생산액의 통계가 없을 경우 출하량과 출하액으로 한다.
4. 수출량 및 수출액
5. 수입량 및 수입액

제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2. 법 제3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 및 제공 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제7조의2(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 등록 및 공고 등: 2015년 1월 1일
2. 제8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30.]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에 따른 자조금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1호	300	500	700
나. 법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법 제37조 제2항제1호	100	200	300
다.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의무거출금 납부일자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 제2항제2호	100	200	300
라. 법 제19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의무거출금 납부일자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대납하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 제2항제3호	100	200	300
마.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농수산업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37조 제2항제4호	100	200	300
바.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의무거출금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2호	300	500	700
사. 법 제21조제3항(법 제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조금의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자조금을 폐지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3호	400	600	900

아. 법 제21조제7항 전단(법 제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납을 중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4호	300	500	700
자.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자조금과 동일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5호	500	700	1,000
차.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를 받지 않거나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6호	300	500	700
카.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 제2항제5호	100	200	300
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37조 제2항제6호	100	200	300
파.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7조 제2항제7호	100	200	300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1.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 2015.1.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목별 농수산업자)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라목에서 "농수산물의 품목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기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품목별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파프리카: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
2. 인삼: 「인삼산업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삼류제조업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인삼제품류의 제조·가공업자, 유통업자, 수출업자
3. 참다래: 유통업자
4. 김: 건조업자, 가공업자,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
5. 전복: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
6. 임의농수산물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이하 "임의자조금단체"라 한다)가 요청하여 농수산물 품목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3조(농수산물자조금의 통합 또는 분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품목을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재배·양식 방법, 재배·양식 지역, 출하 시기, 생산·유통 과정 또는 품목 분류상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통합하거나 분리하게 한 경우에는 그 품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의 구성 등)

-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2개 이상의 자조금단체가 하나의 자조금단체로 통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이하 "공동준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1항 또는 법 제2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자조금 설치계획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자조금단체의 통합에 필요한 사항
- ② 공동준비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통합 대상인 각 자조금단체의 대표가 서로 협의하여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농수산업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제24조제1항을 제외하고 이하 같다) 8명 이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명 이내
 - 가. 법 제9조에 따른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의장·부의장·감사
 - 나. 법 제12조에 따른 대의원회(이하 "대의원회"라 한다)의 의장·부의장·감사
 - 다. 법 제24조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이하 "임의자조금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부위원장·감사
 3. 관련 학계 전문가 1명, 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 1명 및 유통 분야 전문가 각 1명

- ③ 제2항에서 "대표"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의무농수산물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이하 "의무자조금단체"라 한다): 총회(법 제12조에 따라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장
 2. 임의자조금단체: 대표자
- ④ 공동준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공동준비위원회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조금단체가 하나로 통합하여 새로 법 제13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라 한다)나 임의자조금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존속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준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준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무농수산물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무농수산물자조금(이하 "의무자조금"이라 한다)의 명칭
 2. 의무자조금의 설치 이유와 목적
 3. 의무거출금의 부과 대상 및 납부방법
 4.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5. 의무거출금의 납부면제에 관한 계획
 6. 의무자조금의 재원확보 방안 및 운영계획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승인할 때에는 자조금단체의 대표성과 사업역량, 의무거출금 납부방법 및 산정기준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의무자조금 설치에 대한 투표의 절차 및 방법 등)

- ① 자조금단체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설치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투표권자를 확정하여 투표일 10일 전까지 투표 안건, 투표 일시 및 투표 장소를 적은 소집통지서를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전원(全員) 또는 대의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 ② 투표는 무기명(無記名) 비밀투표로 하며, 투표자 1명이 1표를 행사한다.
- ③ 투표는 직접 하거나 우편에 의하여 하되, 우편에 의한 투표는 투표일 오후 6시까지 자조금단체가 지정한 장소에 도착한 것만 유효하다.
- ④ 자조금단체는 투표 당일 투표 장소에 투표자 명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자조금 설치에 대한 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의무자조금 설치에 대한 투표 결과의 공표)

의무자조금단체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투표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1. 일간지
2. 농수산 관련 신문
3. 의무자조금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제8조(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부자)

법 제7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기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의무자조금 품목의 종자업자, 유통업자, 수출업자 및 수입업자
2. 해당 의무자조금 품목을 원료로 하는 제조업자 및 가공업자

제9조(의무거출금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의 변경 등)

의무자조금단체는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의 변경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 변경 계획서를 해당 의무자조금단체의 총회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와 목적
2.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의 변경내용 및 그 산출근거

제10조(총회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권한과 직무)

- ① 총회의 의장은 총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총회의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총회의 감사는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 총회 업무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의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권한과 직무에 관한 사항은 해당 의무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총회 의장의 선출방법 등)

- ① 총회 의장 후보자의 자격은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선거일 현재 최근 2년 이내에 의무거출금 납부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연속하여 의무거출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자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② 의무자조금단체는 총회 의장 선거일 30일 전까지 선거인을 확정하고, 선거 일시, 선거 장소 및 후보자 등록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일 15일 전까지 제2항에 따라 공고된 후보자 등록 장소에 등록하여야 하며, 의무자조금단체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후보자 명부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④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투표자 1명이 1표를 행사한다.
 - ⑤ 총회 의장 선거에서 최다(最多) 득표한 후보자(2명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한다. 이하 "최다득표자"라 한다)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의장으로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가 1명일 때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총회의 의결만으로 의장을 선출한다.
 -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총회 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총회에서 표결한 결과 최다득표자가 총회 의장으로 의결되지 못한 경우
 - ⑦ 의무자조금단체는 총회 의장 당선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즉시 당선자의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⑧ 제2항, 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 의장 선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의무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총회 부의장의 선출방법)

- ① 총회 부의장 후보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을 준용한다.
- ② 총회 부의장은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중에서 총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 부의장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의무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총회 감사의 선출방법)

- ① 총회 감사 후보자의 자격은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선거일 현재 최근 2년 이내에 의무거출금 납부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연속하여 의무거출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자
 2.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② 총회 감사는 총회에서 총회 의장 또는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이 경우 추천받은 사람의 수가 해당 의무자조금단체의 정관에서 정한 감사의 정원보다 많을 때에는 총회에서 투표를 하여 많은 표를 얻은 사람(2명 이상이 같은 수의 표를 얻어 감사의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같은 수의 득표자 중에서 연장자로 한다)부터 차례로 총회 의결을 거쳐 총회 감사로 선출하고, 총회 의결을 통과하지 못한 후보자가 있으면 그 다음 득표자를 총회 의결을 거쳐 총회 감사로 선출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 감사의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의무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총회 의장 및 부의장의 재선출 등)

- ① 의장이 임기 도중 사퇴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50일 이내에 제11조에 따라 의장을 재선출하여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사유 발생일 당시의 남은 임기가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재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부의장이 임기 도중 사퇴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부의장을 재선출하여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사유 발생일 당시의 남은 임기가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재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실비 지급)

의무자조금단체는 총회의 운영을 위하여 의장, 부의장, 감사 등 관계인에게 총회 출석 등 직무 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출계획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대의원회 설립계획서 제출 등)

- ① 의무자조금단체가 법 제12조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려는 경우에는 대의원 선거일,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수, 대의원 수, 대의원회 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대의원회 설립계획서를 대의원 선거일 30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대의원회 의장, 부의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수산업자"는 각각 "대의원"으로 보고, 제11조제3항 중 "농수산업자 10명"은 "대의원 5명"으로 보며, 같은 조 제4항 중 "투표자"는 "대의원"으로 보고, 제13조제2항 전단 중 "농수산업자 5명"은 "대의원 2명"으로 본다.

제17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자격요건 및 선출방법 등)

-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 ②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될 수 없다.
 1. 선출일 현재 최근 2년 이내에 의무거출금 납부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연속하여 의무거출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자
 2. 총회의 감사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④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재선출 및 재선출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8조(농수산물 관련 업계)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관련 업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전국 단위의 농수산 관련 비영리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제19조(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의 공시)

-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음 회계연도의 운용계획을 직전 회계연도 12월 31일까지 공시하고,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20조(의무거출금의 납부방법)

의무거출금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21조(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수수료)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수료는 의무거출금의 100분의 7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무거출금의 수납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22조(수납 거부 및 중단 사유)

법 제20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전쟁
2. 천재지변
3. 대규모 정전(停電)
4.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전산시스템 장애

제23조(의무자조금 폐지 등의 공표)

법 제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폐지에 관련된 공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24조(의무자조금단체의 농수산물 비중기준 등)

- ① 법 제21조제6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경우”란 의무자조금단체 농수산업자의 해당 농수산물 생산량(생산량 통계가 없을 경우 출하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생산액이 전국 생산량 또는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퍼센트 미만일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생산량 또는 생산액은 법 제21조제6항 본문에 따라 정부의 출연 또는 지원을 중단하는 해의 전전년도의 생산량 또는 생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1조제6항 본문에 따라 개선 등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 품목의 특성과 그 조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최대 2년간의 조치 이행기간을 둘 수 있다.

제25조(임의농수산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

- ① 법 제22조에 따른 자조금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의농수산자조금(이하 “임의자조금”이라 한다)의 명칭
 2. 임의자조금의 설치 이유와 목적
 3. 임의거출금의 부과 대상 및 납부방법
 4. 임의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5. 임의자조금의 재원확보 방안 및 운영계획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승인할 때에는 자조금단체의 대표성, 사업역량 및 재원 확보 방안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6조(임의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부자)

법 제23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8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8조 중 "의무자조금"은 "임의자조금"으로 본다.

제27조(임의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

법 제26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년도 이월액 및 해당 연도 조성액을 합한 금액 중 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연도에 사용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의자조금 사용액"이라 한다)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임의자조금 사용액의 100분의 20
2. 임의자조금 사용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임의자조금 사용액의 100분의 30. 다만,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8조(과오납금의 환급 절차)

-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단체는 법 제29조에 따라 과오납금을 확인하거나 농수산업자가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 ②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단체는 반기(半期)별로 과오납금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였을 때에는 환급내용을 수납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외부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1명 이상을 경제·경영 분야, 재무·회계 분야 및 농수산 분야별로 모두 보유한 법인, 단체 또는 기관(대학을 포함한다)을 외부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박사학위 소지자
 2.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외부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③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의 사업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하는 외부전문기관은 자조금단체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해당 자조금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전문기관은 제공받은 자료를 평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④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이하 "자조금 운용 평가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조금단체의 일반 현황과 해당 농수산물 품목의 생산·유통·수출입 등 내·외부 환경 분석
 2. 자조금의 조성, 운용 실태 및 성과에 관한 분석
 3. 자조금단체의 해당 농수산물 품목의 대표성
 4. 자조금단체의 사업 효율성, 발전가능성 등 사업성과 분석 및 개선책
 5. 제30조에 따라 통보받은 검사 결과 등의 반영 정도
- ⑤ 자조금단체는 외부전문기관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자조금 운용 평가보고서를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지도·감독 결과 통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보고, 서류제출 또는 출입검사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자조금 단체에 알릴 수 있다.

제31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공동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015년 1월 1일
2. 제5조에 따른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2015년 1월 1일
3. 제9조에 따른 의무거출금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의 변경 절차: 2015년 1월 1일
4. 제11조에 따른 총회 의장의 선출방법 등: 2015년 1월 1일
5. 제12조에 따른 총회 부의장의 선출방법: 2015년 1월 1일
6.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자격: 2015년 1월 1일
7. 제21조에 따른 수납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산정방법: 2015년 1월 1일
8. 제24조제1항에 따른 의무자조금단체에 대한 출연·지원의 중단기준: 2015년 1월 1일
9. 제27조에 따른 임의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의 한도: 2015년 1월 1일
10. 제28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환급 절차: 2015년 1월 1일
11. 제29조에 따른 외부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평가절차 등: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1.6.]

참고 문헌

- 관세청(www.customs.go.kr). 무역통계.
- 국가기록원(www.archives.go.kr). 농림해양수산.
- 김민경. 2008. 「낙농자조금사업의 현황과 성과」. GS&J인스티튜트.
- 김태훈 외. 2014. 「수입쌀 유통현황 및 부정유통 방지 대책 수립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노경상 외. 2014. 「2013년도 한돈자조금 성과분석」. 한국축산경제연구원.
- 노경상 외. 2015. 「2014년도 한우자조금 성과분석」. 한국축산경제연구원.
- 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홍보.
- 농림축산식품부. 2014.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 관련 설명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5.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 농림축산식품부. 2016. 1. 6.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5. 2. 17. “농식품부, 설 명절 전 쌀 변동직불금 조기 지급 완료”.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5. 5. 21. “인삼, 농산물 최초“의무자조금”도입”.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5. 8. 19. “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원산지 집중단속 124건 적발”.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5. 10. 31. “우리나라산 쌀의 중국 수출길이 열린다”.
- 농수축산신문. 2008. 12. 2. “<초점>한우자조금, 2기 출범 1.한우자조금사업의 어제와 오늘”.
-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www.ichicken.or.kr). 설립목적.
-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www.ichicken.or.kr). 사업성과.
- 문한필 외. 2014. 9.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WTO 농업보조 정책 연구: 우리나라의 WTO 농업보조 통보실적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종수 외. 2001. “낙농자조금사업의 성과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제28권 제1호.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Management and Policy

- 박종수 외. 2006. 「쌀자조금 제도의 도입 및 운영방안」. (사)한국자조금연구원.
- 아칸소주 쌀자조금 위원회(www.arkrice.org).
-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www.imilk.or.kr). 설립목적.
-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www.imilk.or.kr). 연도별 운영실적.
- 정찬진. 2013. 「낙농자조금의 수급조절 효과 및 오리산업의 계열화 효과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축산경제. 2004. 「“축산자조금사업 추진 상황점검”세미나」.
- 최병욱 외. 2012. 「농수산자조금법 제정에 따른 원예자조금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통계청(kosis.kr)-경지규모별 농가 및 경지면적.
- 통계청(kosis.kr)-경지규모별 농업조수입 농가경제.
- 통계청(kosis.kr)-논면적규모별 농가 및 논면적.
- 통계청(kosis.kr)-미곡생산량 백미 92.9%.
- 통계청(kosis.kr)-농림어업-농업-농작물생산조사.
- 통계청(kosis.kr)-농림어업-농업-양곡소비량조사.
- 통계청(kosis.kr)-물가·가계-물가-산지쌀값조사.
- 통계청(kosis.kr)-1인당 연간 양곡소비량.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5. 「2014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www.at.or.kr). 가금현황.
- 한국농어민신문. 2015. 「심순택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장 “자조금 거출률 100% 돼야 닭고기 산업 지속가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 2015. 4. 「쌀 관측」.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1. 「농업전망2016: 급변하는 농업·농촌, 내일을 기획한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토론회 자료. 2015. 9. 17. “늘어나는 쌀 재고 어떻게 할 것인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토론회 자료. 2015. 12. 9. “중장기 쌀 수급 안정방안”.
- 한국인삼협회(www.korean-ginseng.org). 사업추진실적.
- 한국인삼협회(www.korean-ginseng.org). 인삼 자조금 납부기준.
- 한국인삼협회(www.korean-ginseng.org). 인삼 자조금 납부절차.
- 한국인삼협회(www.korean-ginseng.org). 자조금의 목적.
-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www.porkboard.or.kr). 설립목적 및 연혁.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www.porkboard.or.kr). 설립목적 및 연혁.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www.hanwooboard.or.kr). 연도별 사업추진 내역.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www.hanwooboard.or.kr). 연도별 운영실적.

Ricegrowers' Association of Australia Inc. 2014. 11. 「Submission to the Senate Rural and Regional Affairs Committee on the agricultural R&D levy system」.